

2013년

성덕대학교

교과과정 편람



성덕대학교
SUNGDUK C. UNIVERSITY

Contents

성덕대학교 교육과정 / 02

국가전문가 자격증과정 / 12

교과과정해설 / 24

성덕대학교 학칙 / 110

성덕대학교 시행세칙 / 135

<부록>

국가자격증 관련 법령 / 146

성덕대학교 교육과정

1. 성덕대학교 설립이념 및 교육과정 편성 근거

가. 대학 건학 이념

- ① 우리 대학의 건학 이념은, 충효를 근본 삼는 도덕 교육과 지인용경을 겸비한전인 교육을 통하여, 학행일치의 정신으로 국제화 시대를 주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나. 교육과정 편성 근거

- ① 본 대학의 교육과정은 고등교육법 제21조와 학칙에 근거하여 편성한다.

2. 교육과정의 구분

교육과정은 교양교육 및 전공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위한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으로 구분된다.

3. 교육과정 편성 방향 및 기본원칙

가. 교육과정 편성방향

- ①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생 중심의 전공 선택권 보장
- ② 학생 요구에 부응하고 졸업 후 진학, 취업 등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
- ③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교과목 개설

나.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 원칙

- ① 교육과정은 학과 단위로 구분하여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교육과정은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편성하되, 교양교육 및 전공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편성한다.
- ③ 교과목의 학점 단위는 3학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2학점, 1학점 단위로 편성할 수 있다.

4. 교과목의 구분

교육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며 전공과목에 준하는 교직과목이 포함된다.

가. 교양과목이란 대학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인격도야에 필요한 전인교육을 위한 교과목과 여러 학문분야의 도구과목 등을 말한다.

나. 전공과목이란 각 학과의 전문 학술 연구에 직접 필요한 교과목을 말한다.

다. 교직과목이란 교원자격 취득 목적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들 교과목은 각각 아래와 같이 구분 한다

- ① 교양과목 : 교양선택과목, 전공교양과목
- ② 전공과목 : 전공선택과목
- ③ 교직과목 : 교직과목

5. 교과목의 구분

가. 교양과목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을 21세기형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국내의 산업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문직업인 양성의 목표를 실현 할 수 있도록 교양교육을 일반교양과 기초교양의 이원화된 교육체계를 시행한다.

1) 일반교양은 특정영역의 집중을 추구하는 전공교육과는 달리 학문간 경계를 떠나 사고할 수 있는 능력과 창조적 사고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지식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능력을 함양하고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편성하고, 다양한 활동과 지적 성취를 경험하게 하여 학생들의 사고형성과 자기개발에 도움을 주고 다양한 학문의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교과목으로 편성한다.

2) 기초교양 교육의 목적은 ①학문추구를 위한 기초능력, ②분석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능력, ③생각과 지식을 교환하는 의사소통 능력, ④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 등의 능력 배양'으로 설정하여 현대의 지성인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위한 교과목, 각 전공영역과 관련된 개론적 성격의 교과목들을 나름의 의의와 효용성을 고려하여 교양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과목을 설정한다.

이를 위해 교양-전공 연계교육을 통하여 전공기초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소양을 함양하며, 인문사회계열에서 전공교양이라 부를 수 있는 기초교양이나 전공기초교양에 해당하는 교양 교과목을 개설함으로써 전공의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한 후 전공 교육의 기반을 갖추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공교양의 전공 관련 교과목들은 전공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편성하여 해당 전공 분야에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년별로 9학점 이하로 교과목을 편성한다.

나. 전공과목

① 전공과목은 각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 중에서 교양과목 최소이수 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72학점(유아교육과 108학점) 이내에서 전공선택과목, 교직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 학과장은 전공과목을 편성하기에 앞서 학과 소속 교수, 관련 산업체의 전문가, 지역사회의 관련인사, 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공과목 편성시 반영하도록 권장 한다.

다. 교직과목

교직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등에 의해 편성하여야 한다.

6. 교육과정 편제

교육과정의 편제는 다음과 같다.

-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교직교육과정 등으로 편제한다.

- ② 교육과정구성으로는 이론교과, 실기교과, 이론과 실기 및 실험실습 병행 교과를 두되, 각 교과의 비율은 과정의 특성에 맞게 설정한다.
- ③ 교양교육과정은 교양선택과 전공교양으로 편제한다.
- ④ 전공교육과정은 전공선택 교과로 구분한다
- ⑤ 교직교육과정은 교직이론교과, 교직소양교과와 교육실습교과로 편제한다.

7. 교과목의 이수

가. 교양과목

- ① 교양과목의 최소이수학점은 최소졸업학점 기준의 10%이상으로 한다.
- ② 2년제 - 8학점이상
- ③ 3년제 - 12학점이상

나. 전공과목

- ① 전공과목의 최소이수학점은 40학점이상으로 한다.

다. 교직과목

- ① 교직과목은 교직과정 설치 승인학과(유아교유과) 학생에 한하여 이수한다.
- ② 교원자격증 종별 : 유치원 정교사(2급)

8. 실습실습교육

가. 목적과 목표

실험실습 교육은 자연과 사회의 현상을 지탱하고 있는 조직이나 법칙을 해명하고 각종 기술을 습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학과(계열)에서는 실험실습실과 기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고 다양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발하여 실험실습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우리 대학 실험실습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i.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기 능력을 배양한다.

- ii. 학과(전공) 특성화 관련 전공능력을 배양한다.
 - iii. 사회가 요구하는 실용·응용 능력을 배양한다.
 - iv. 정보화·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
- 나. 각 학과(계열)에서는 실험실습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한다.
- 다. 각 학과(계열)에서는 실험실습교육장 및 실험실습교육 기자재의 사용수칙과 안전 수칙을 꼭 숙지 후 사용하여야 한다.

9.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강의계획서에는 교과개요, 학습목표, 수업방법, 평가기준, 수업자료(교재), 과제물, 참고문헌, 권장 사항 등을 명시토록 한다.
- 나. 교과개요에는, 관련 학문 분야에 대한 개념, 핵심 수업(강의) 내용, 수업(강의) 결과의 기대 효과, 수업(강의)결과의 파급 효과[인접 학문과의 연관성], 학문적, 사회적 기능대학 이념과의 관련성 제시] 등을 명시토록 하여 학습의 효율을 높이도록 한다.
- 다. 수업방법은 오프수업 및 온라인, 블렌디드 수업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토록 한다.
- 라. 학습평가 방법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결사항, 과제물 등을 참고하며, 기타교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토록 한다.
- 마. 수업자료(교재)는 오디오·비디오 자료, 현장 등을 활용토록 하며, 다양한 자료(교재)를 개발토록 한다.
- 바. 과제물은 교과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 사. 참고문헌은 주요 관련 문헌 자료를 상세히 제시한다.
- 아. 권장 사항으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당부의 말이나, 과년도 모범 레포트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자. 강의계획서의 내용은 실제 수업과 일치하여야 한다.

10. 강의평가

수업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강의평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① 강의평가는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용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② 강의평가는 수업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③ 강의평가 관리는 교무팀에서 담당한다.
- ④ 강의평가 시기는 매 학기말 실시토록 한다.
- ⑤ 강의평가 대상은 전 교·강사로 한다.
- ⑥ 강의평가 설문은 강의구성, 강의진행, 학업성취 정도 등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세부 내용은 주기적으로 검토 개선할 수 있다.
- ⑦ 강의평가 결과는 수업개선에 참고토록 하며, 우수자는 포상할 수 있다.
- ⑧ 학생들의 자기 평가와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도 실시할 수 있다.
- ⑨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1. 교육과정 연구 및 지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한다.

- ① 학과 차원의 교육과정을 연구토록 하며, 이를 적극 지원한다.
- ② 산업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발하며, 이를 위해 겸임교수 또는 산업체인사를 교육과정개발에 참여토록 한다.

12. 전과

가. 교양과목

- ① 교양과목의 최소이수학점은 최소졸업학점 기준의 10%이상으로 한다.
- ② 2년제 - 8학점이상
- ③ 3년제 - 12학점이상

나. 전공과목

- ① 전공과목의 최소이수학점은 40학점이상으로 한다.

다. 교직과목

- ① 교직과목은 교직과정 설치 승인학과(유아교유과) 학생에 한하여 이수한다.

- ② 교원자격증 종별 : 유치원 정교사(2급)

13. 편입학

가. 일반편입

- ① 모집학년 : 2학년
- ② 지원자격
 - 전문대학 졸업자 및 1학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사학위 소지자

나. 학점인정범위

- ①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자유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40학점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 ②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학과회의를 통한 심의를 거쳐 인정 한다.
- ③ 편입학생의 학점인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4. 교과목의 이수단위 및 수업제도

가. 교과목의 이수단위

- ① 학기는 1년을 2개 학기로 구분하며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중에 계절 학기를 둘 수 있다.
- ②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 단위로 하며 학점은 1학기 동안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③ 매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24학점 이내로 한다.

나. 수업제도

- ① 학기당 수업일수는 15주 이상으로 한다.
- ② 수업일수 15주는 14주 수업과 1주 기말시험, 또는 13주 수업과 1주씩 중간 및 기말시험으로 구분한다.

- ③ 수업시간은 09시부터 24시까지 운영 할 수 있으며 강좌는 09:00부터 22:00까지 개설·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업시간은 50분 수업과 75분 수업으로 진행하며 각각 1시수와 1.5시수로 인정된다.
- ④ 학생의 출석은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오프강좌 출석과 온라인 출석을 할 수 있으며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면 해당 교과목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
- ⑤ 강좌당 학생수는 학과별로 강의실 여건 및 수업형태에 따라 분반 할 수 있다.

다. 계절학기

① 강좌개설 신청

계절학기 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학과에서는 교과목을 학사지원처에 통보하여 학생들이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강대상 및 이수 학점

- 계절학기는 재학생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을 원하는 자는 8학점 이내로 지정 기간 동안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계절학기 수업은 개설방법에 따라 오프수업 및 온라인수업으로 진행되며 학점취득은 총 시간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15. 평 가

가. 성적 등급 및 평점

- ① 교과목의 성적은 시험, 과제, 출석,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 ② D0 이상의 경우 학점 취득으로 인정 한다.
- ③ 사회봉사는 P(Pass)/N(No Pass)급으로 평가하고,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되 평점계산에서는 제외한다.
- ④ 교과목별 평점은 그 교과목의 학점 수와 평점을 곱하여 계산하고 총 평점은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별 평점을 모두 더하여 계산하며 평점평균은 총평점을 수강 신청한 학점수로 나눈다.
- ⑤ 낙제 과목(F등급)은 성적평점평균에는 산입한다. 단, 졸업생에게 발급

하는 성적증명서에는 낙제 과목(F등급)을 제외하여 평점평균을 환산하여 발급한다.

- ⑥ 성적평가의 방법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상대평가의 성적등급별 분포비율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등 급	A등급 이상	B등급이상 (A+B)	C등급이하 (C+D+F)
구성비	30%이하	70%이하	30%이상

- ⑦ 위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교직관련 교과목
- 2) 순수실험(실습·실기) 및 현장실습 과목
- 3)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

나. 평가 제도

- ① 시험은 정기시험, 임시시험으로 구분한다.
- ② 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으로 구분하며 중간시험은 학기 중, 기말시험은 학기 말에 실시한다.
- ③ 임시시험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 할 수 있다.

16. 졸 업

가. 졸업 소요 학점

-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2년제 80학점, 3년제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
- ② 교과구분별 학점에 있어 교양과목은 2년제 8학점, 3년제 12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한다.
- ③ 사회봉사는 필수졸업요건으로 필히 이수해야만 졸업 할 수 있다.
- ④ 제2전공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②항의 최소전공학점에 불구하고 교양과목을 제외한 전공학점은 <별표 3>의 학과별 전공과목 최소이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⑤ 졸업소요학점을 취득하였으나 필요한 자격증 및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졸업유예를 할 수 있다.

나. 졸업 학위

① 학위 종류의 결정

- 학과별 학위 결정은 해당 학과와 협의 후 신청에 의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② 학위 수여

- 졸업사정을 통과한 학생들은 학위증서를 배부한다.

국가 전문가자격 교육과정

1. 정의

본 대학의 계열(학과)은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국가전문가 자격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평생학습시대의 현장성과 활용성 그리고 통합성을 증가시키고,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을 배양하여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예비국가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갖게 한다.

계열명	학과명	국가공인자격증명	비고
인문사회계열	사회복지계열	사회복지사2급, 평생교육사, 보육교사2급	
	노인재활복지상담과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유아교육과	유치원정교사2급, 평생교육사	
	특수재활복지과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청소년보건복지과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보건복지행정과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사회복지상담과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아동복지상담과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자연과학계열	작업치료과	작업치료사	
	응급구조과	응급구조사	
	안경광학과	안경사	
	재활승마과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예체능계열	음악계열	보육교사2급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 취득

- 이수교과목(학점)

- 1) 이수대상 : 인문사회계열 재학생
- 2) 이수절차 : 별도의 절차 없이 재학 중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요건 이수
- 3) 등급별 자격 요건

<사회복지사2급 자격기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3조 관련)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 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 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기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성덕대학교 교과과정>

구분	인문사회계열 재학생	
자격등급	사회복지사 2급	
이 수 교 과 목	과목명	비고
	사회복지개론	필수
	인간행동과사회환경	필수
	사회복지정책론	필수
	사회복지법제	필수
	사회복지실천론	필수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필수
	사회복지조사론	필수
	사회복지행정론	필수
	지역사회복지론	필수
	사회복지현장실습	필수
	필수과목 10과목 반드시 이수	
	아동복지론	선택
	청소년복지론	선택
	노인복지론	선택
	장애인복지론	선택
	여성복지론	선택
	가족복지론	선택
	정신건강론	선택
	선택과목 4과목 이상	

<보육교사2급 자격기준>

※ 관계법령 : 영유아교육법(제12조제1항 관련)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1.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보육기초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4과목(12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 아동 수·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3과목(9학점) 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2학점) 필수
전체	12과목(35학점) 이상	

※ 비교

- 1)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관계 없이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 2)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기관: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 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내로 한다.

나. 실습기간: 실습기간은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다. 실습 인정시간: 실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실습의 평가: 실습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성덕대학교 관련 교과목>

구분	인문사회계열 재학생			
자격 등급	보육교사 2급			
이 수 교 과 목	영역	과목명	비고	이수과목
	보육기초	아동복지(론)	필수	4과목 (12학점 필수)
		보육학개론	필수	
		아동발달(론)	필수	
		보육과정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선택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선택	
		아동생활지도	선택	
		아동상담(론)	선택	
		특수아동지도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선택	3과목(9학점) 이상 선택
		언어지도	선택	
		아동문학	선택	
		아동음악과 동작	선택	
		아동미술	선택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선택	
	건강, 영양 및 안전	아동안전관리	선택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아동영양학	선택	
		정신건강(론)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가족복지(론)	선택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지역사회복지(론)		선택		
보육실습	보육현장실습	필수	1과목(3학점) 필수	
전체	12과목 (36학점)이상			

<평생교육사2급 자격기준>

※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제5조제1항 관련)

평생교육 관련 과목

과정	구분	과목명
양성 과정	필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 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 담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 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 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성과정의 과목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와 내용이 동일하다는 평 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 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 제19조 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성덕대학교 관련 교과목>

구분	인문사회계열 재학생				
자격 등급	평생교육사 2급				
이 수 교 과 목	영역	과목명	비고	이수과목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필수	4과목 (12학점 필수)	
		평생교육방법론	필수		
		평생교육경영론	필수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필수		
	실천영역	평생교육실습	필수	1과목 (3학점 필수)	
		방법영역	아동교육론	선택	5과목 (15학점 이상)
			청소년교육론	선택	
			여성교육론	선택	
			노인교육론	선택	
			시민교육론	선택	
			문자해득교육론	선택	
			특수교육론	선택	
			성인학습 및 상담	선택	
			교육사회학	선택	
			교육공학	선택	
			교육복지론	선택	
			지역사회교육론	선택	
			문화예술교육론	선택	
인적자원개발론			선택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선택				
기업교육론	선택				
환경교육론	선택				
교수설계	선택				
교육조사방법론	선택				
상담심리학	선택				
전체	10과목(30학점) 이상				

<유치원 정교사 2급>

※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관련)

교사자격기준

자격 급별	자격기준
정교사 (1급)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정교사 (2급)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졸업 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준교사	1.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비고	1. 원장·원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장·교감, 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2. 이 표중 전문대학에는 종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성덕대학교 관련 교과목>

구분	유아교육과 재학생			
자격 등급	유치원 정교사 2급			
이 수 교 과 목	영역	과목명	비고	이수과목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직	7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직	
		교육과정	교직	
		교육평가	교직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직	
		교육심리	교직	
		교육사회	교직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직	
	전공 기본 이수과목	유아교육론	선택	7과목이상 (21학점 이상)
		놀이지도	선택	
		유아관찰 및 실습	선택	
		유아언어교육	선택	
		유아사회교육	선택	
		유아과학교육	선택	
		유아수학교육	선택	
		부모교육	선택	
		아동복지	선택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교직	2과목 (4학점 이상)	
	교직실무	교직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선택	2과목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선택		
전체	18과목이상 (50학점이상)			

<작업치료사 보건의료국가시험 시험과목>

※관계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관련)

<성덕대학교 관련 교과목>

- 의료관계법규, 공중보건학개론, 해부생리학개요, 수예 및 공작, 작업치료개론, 일상생활동작

<안경사 보건의료국가시험 시험과목>

※관계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관련)

의료기사 등의 종류	필기시험과목	실기시험의 범위
4. 작업치료사	가. 공중보건학 개론 나. 해부생리학 개요 다. 작업치료 개론(측정 및 평가, 질환별 작업치료 사업 분석) 라. 일상생활동작(생활동작 평가 및 생활동작 분석) 마. 수예 및 공작 바. 의료 관계 법규	치료적 운동 및 보조기, 의수족에 관한 것
8. 안경사	가. 안광학(안경광학·기하광학·물리광학·안광학기기에 관한 것) 나. 안경학(안경 조제 및 가공, 안경학 개론, 안경재료에 관한 것) 다. 안과학(시기해부학·시기생리학·안질환·시기능이상에 관한 것) 라. 의료 관계 법규	조제 및 가공에 관한 것, 상품 지식(렌즈·테)과 안광학기기의 기초동작에 관한 것

비고: 의료 관계 법규는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다만, 의무기록사의 경우에는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하고, 안경사의 경우에는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성덕대학교 관련 교과목>

- 의료관계법규, 안경학, 안과학, 안경학, 실기시험

<응급구조사 보건의료국가시험 시험과목>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6조 관련)

응급구조사시험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

1.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구분	과목
1급 응급구조사	기초의학, 전문응급처치학총론, 전문응급처치학각론, 응급의료관련법령, 응급환자관리
2급 응급구조사	기본응급처치학총론, 기본응급처치학각론, 응급의료관련법령, 응급의료장비, 기본응급환자관리

2. 실기시험의 시험방법

실기시험은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성덕대학교 관련 교과목>

- 기초의학, 응급환자관리, 전문응급처치학총론, 전문응급처치학각론, 응급의료관련법령

<말 조련사 국가전문자격 시험과목>

※관계법령 : 말산업 육성법(제4조제4항 관련)

<재활승마지도사 국가전문자격 시험과목>

※관계법령 : 말산업 육성법(제4조제4항 관련)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등급 구분

1. 응시자격

가. 공통

- 1) 만 18세 이상인 사람
- 2)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1급 자격시험의 경우: 2급 자격 취득 후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다. 2급 자격시험의 경우: 3급 자격 취득 후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 자격별 시험과목

자격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등급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필기	마술학(馬術學) 마학(馬學) 말 보건관리 말 관련 상식 및 법규	장제학(裝蹄學)의 장제 이론 말의 해부 및 생리 말 관련 상식 및 법규	재활승마이론 마술학 마학 말 관련 상식 및 법규
실기	마술 마필관리 실무 말 조련 및 관리실무	장제 실무	마술 재활승마 실무

비고: 위 표에서 "말 관련 법규"란 「말산업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3.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성덕대학교 관련 교과목>

- 재활승마이론, 마술학, 마학, 말관련 상식 및 법규, 마술, 재활승마실무
- 마학, 마술학, 말보건학, 말관련 상식 및 법규, 말관리실무, 마술, 말조련 및 관리실무

교과과정해설

노인재활복지상담과 Elderly Rehanilitation Welfare Counseling

전공교양

가족과젠더(Gender & Family)

성과 가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이해하고 건강한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습득함으로써 행복한 가족복지의 실현을 창조해나간다.

정신건강론(Mental Health)

인간의 기본적인 발달과 그와 관련된 정신건강의 문제 특히, 신경증 및 정신 질환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여 내담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사회복지사로서 알아야 할 역할에 대한 부분을 실제 예를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복지론(Social Work in Family)

사회변화와 함께 제도, 풍습, 법률, 오락, 산업 등 여러 분야도 이에 맞추어 급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가장 중요한 변화로 결혼지체, 출산율저하, 이혼율 증가, 다문화가정의 급증과 관련된 문제들은 가족을 둘러싼 변화들이다. 이러한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한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복지 차원의 대책들의 마련이 필요하다.

가족상담및치료(Family Counseling & Therapy)

가족상담 및 치료의 특성, 가족체계 이해, 가족상담 및 치료이론 적용사례, 실제 가족상담 및 치료의 과정과 문제유형별 적용, 가족상담자 역할 등을 포함하여 가족상담 및 치료를 깊이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공선택

사회복지개론(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본 과목은 사회복지의 학문적 연구와 실천에 관한 지식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사회복지학을 연구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의 가치와 전문지식으로서의 태도, 사회복지발달과정의 이해와 더불어 실천방법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분야론 등에 대해 알아본다.

인간행동과사회환경(Human Behavior & the Social Environment)

사회복지학은 인간중심의 학문으로서 기본적인 사회과학은 물론 인문과학, 자연과학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광범위한 학문으로보다 체계적인 지식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교과목은 인간복지의 발달지원 및 인간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사회복지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론(Social Work Practice Theories)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 상담가 및 임상가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사회복지실천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 익히고 임상이론 및 실천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안다.

가족과문화(Family & Culture)

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족이 보다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 발전키며 나갈 수 있도록 가족문화조성을 실천하는 현장전문가의 기초를 다진다.

노인케어기술(Elderly care skill)

노인대상자들에서 흔히 발생하는 호흡기계, 순환기계, 신경계, 내분비계, 비뇨기계, 소화기계, 근골격계, 피부계및 감각계, 여성생식기계 및 노인정신질환 문제를 다양한 자료제시와 함께 진단에 대해 확인하며 최신치료 동향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따른 중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과목이다.

간호케어실습(Nursing care practice)

건강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요구를 사정할 수 있으며 정상과 비정상, 실제적 잠재적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노인복지론(Social Welfare for the Elderly)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과 노인문제의 현재를 살펴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향후 사회복지사로서 노인복지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노인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한다.

사회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for the Disabled)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복잡 다양한 문제와 함께 서비스 대상자들(사회적 약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다. 즉 사회적 약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 및 관리와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학습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Skill&Techniques for SocialWork Practice)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은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처한 다양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개입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론), 가치 그리고 기술을 재구성하면서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돕는 과목이다.

아동발달(child Development)

본 교과목에서는 아동기까지의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교육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아동복지론(Welfare With Child)

사회변화에 따른 아동의 권리사상과 가족중심 관점에서 접근하여 아동 및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 정책, 실천방법에 관한 내용을 익히고 실제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실현하는지에 대해 배운다. 또한 Blended Learning를 통한 이론(on-line)과 실무중심(off-line)의 교육을 통해 아동복지실천 기술에 대한 실무를 익힌다.

미술치료(Art Therapy)

상담과 심리치료의 기본이 되는 미술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통해 임상장면에서 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미술치료기법들을 이해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사회복지실천으로 지역주민들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생활고 등에 대한 변화수단으로, 지역주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에서 경제적, 사회적, 가치적, 문화적으로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데 그 활동목표를 둔다.

사회복지조사론(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본 교과목은 사회복지의 과학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사회복지조사방법에 대해 학습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방법의 기초가 되는 조사의 기술, 자료처리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학습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육학개론(Introduction for the Childcare)

보육의 이론적 기초를 통해 기본개념과 보육사업 변천을 알아보고, 영유아의 발달과정과 보육환경 구성 및 보육프로그램을 익히고 보육의 본질과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여 보육교사로서의 역량을 갖춘다.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Program Development & Evaluation for Infant)

부모와 유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유아교육현장에 나갔을 때 영유아프로그램과 그것에 맞는 대상 영유아를 접목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보육과정(Curriculu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보육과정은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에게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킬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과목으로 보육과정의 이해, 구성, 내용,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서 예비교사들에게 현장에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보육실습(Parctice in ChildCare)

보육실습은 예비교사들이 정규실습 이전까지의 교사양성교육을 통해 습득한 이론이나 지식을 실제로 경험해 보고 적용해 보는 기회이므로, 유아교육현장에 나갔을 때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수업을 하고 성공적인 실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상담심리(Child counseling)

본교과목은 상담의 역사와 이론을 중심으로 상담기술을 배워 상담장면에서의 능력을 배양하여 전문가적인 능력을 가지도록 한다.

사회복지정책론(Social Welfare Policy)

본 강의의 목표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통해 사회복지 정책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추구하는 가치들을 이해하여 그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사회복지 정책의 제이론을 알아보고 그 이론들이 전개된 배경과 원리 그리고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및 방법을 탐색해 본다.

사회복지법제(Social welfare & Policy)

본 교과는 사회복지법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것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회복지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배양하기 위한 교과이다.

사회복지현장실습(Social Work Practice)

사회복지실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사회복지실습에서의 책임성, 현장실습의 슈퍼비전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 철학 및 윤리에 입각한 이론과 기술을 실천 현장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아동문학(Children's Literature)

아동문학 유아·아동 문학의 이론적 기초와 문학교육의 접근, 유아문학의 종류, 유아·아동 문학의 실재를 통해 유아·아동문학교육의 대한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수립한다.

아동음악과 동작(Music & Movement in early Childhood)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이 음악과 동작에 친숙함을 가지게 되고 정서적 안정감과 심미감을 신장시켜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능력을 기른다.

아동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for Children)

보육시설이나 기관의 아동에게 주어진 유해환경이나 안전에 대해 최소한의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를 함으로써 안락한 환경속에서 학습을 할수있도록 배려하며 아동 스스로 안전에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함이 교육목적이있다

노인상담(Elderly Counseling)

노인의 개념과 노화이론, 노인과 노년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상담의 정의와 특성, 의의와 역할, 노인상담에서 나타나는 기제들을 학습한다. 또한 노인상담의 지침과 기법,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성격적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상담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배운다.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우울증, 성문제, 장애, 학대, 자살, 죽음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한다.

전공교양

아동문학(Literature for Child)

아동문학 유아·아동 문학의 이론적 기초와 문학교육의 접근, 유아문학의 종류, 유아동 문학의 실재를 통해 유아동문학교육의 대한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수립한다.

아동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for Children)

보육시설이나 기관의 아동에게 주어진 유해환경이나 안전에 대해 최소한의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를 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속에서 학습을 할수있도록 배려하며 아동 스스로 안전에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함이 교육목적이있다

상담심리(Counseling)

최근에 사회가 급속도로 복잡해지면서 사회의 각 분야에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직장, 가정등에서 부적응자들이 속출하고 있다.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여러 단체, 기관에서 전문 상담가를 양성하고 있다.상담가로서 기본적 소양을 갖추는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상담 이론과 기초적 상담 실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족과젠더(Family & Gender)

성과 가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이해하고 건강한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습득함으로써 행복한 가족복지의 실현을 창조해나간다.

가족과문화(Family & Culture)

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족이 보다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 발전키며 나갈 수 있도록 가족문화조성을 실천하는 현장전문가의 기초를 다진다.

전공선택

아동발달(child Development)

본 교과목에서는 아동기까지의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교육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보육학개론(Introduction for the Childcare)

보육의 이론적 기초를 통해 기본개념과 보육사업 변천을 알아보고, 영유아의 발달과정과 보육환경 구성 및 보육프로그램을 익히고 보육의 본질과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여 보육교사로서의 역량을 갖춘다.

사회복지개론(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본 과목은 사회복지의 학문적 연구와 실천에 관한 지식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사회복지학을 연구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의 가치와 전문지식으로서의 태도, 사회복지발달과정의 이해와 더불어 실천방법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분야론 등에 대해 알아본다.

아동복지론(Welfare for child)

사회변화에 따른 아동의 권리사상과 가족중심 관점에서 접근하여 아동 및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 정책, 실천방법에 관한 내용을 익히고 실제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실현하는지에 대해 배운다. 또한 Blended Learning를 통한 이론(on-line)과 실무중심(off-line)의 교육을 통해 아동복지실천 기술에 대한 실무를 익힌다.

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사회복지실천으로 지역주민들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생활고 등에 대한 변화수단으로, 지역주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에서 경제적, 사회적, 가치적, 문화적으로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데 그 활동목표를 둔다.

정신건강론(Mental Health)

인간의 기본적인 발달과 그와 관련된 정신건강의 문제 특히, 신경증 및 정신질환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여 내담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사회복지사로서 알아야 할 역할에 대한 부분을 실제

예를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놀이지도(play & Early Childhood Education)

놀이는 유아들이 전인적 발달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생활을 풍부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유아에 관련된 놀이이론과 실제 유아들에게 제공되는 놀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복지법제론(Social welfare & Law)

본 교과는 사회복지법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것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회복지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배양하기 위한 교과이다.

사회복지실천론(Theories of Social welfare Practice)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 상담가 및 임상가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사회복지실천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 익히고 임상이론 및 실천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안다.

가족복지론(Social Welfare for Families)

사회변화와 함께 제도, 풍습, 법률, 오락, 산업 등 여러 분야도 이에 맞추어 급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가장 중요한 변화로 결혼지체, 출산율저하, 이혼율 증가, 다문화가정의 급증과 관련된 문제들은 가족을 둘러싼 변화들이다. 이러한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한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복지 차원의 대책들의 마련이 필요하다.

인간행동과사회환경(Human Behavior & the Social Environment)

사회복지학은 인간중심의 학문으로서 기본적인 사회과학은 물론 인문과학, 자연과학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광범위한 학문으로보다 체계적인 지식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교과목은 인간복지의 발달지원 및 인간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사회복지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복지론(Social Welfare For The Elderly)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과 노인문제의 현재를 살펴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향후 사회복지사로서 노인복지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노인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Social Work Practicum)

사회복지실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사회복지실습에서의 책임성, 현장실습의 슈퍼비전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 철학 및 윤리에 입각한 이론과 기술을 실천 현장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론(Social Welfare Policy)

본 강의의 목표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통해 사회복지 정책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추구하는 가치들을 이해하여 그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사회복지 정책의 제이론을 알아보고 그 이론들이 전개된 배경과 원리 그리고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및 방법을 탐색해 본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Skill & Techniques for Social Welfare Practice)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은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처한 다양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개입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론), 가치 그리고 기술을 재구성하면서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돕는 과목이다.

사회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복잡 다양한 문제와 함께 서비스 대상자들(사회적 약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다. 즉 사회적 약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 및 관리와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학습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가족상담및치료(Family Counseling & Therapy)

가족상담 및 치료의 특성, 가족체계 이해, 가족상담 및 치료이론 적용사례, 실제 가족상담 및 치료의 과정과 문제유형별 적용, 가족상담자 역할 등을 포함하여 가족상담 및 치료를 깊이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술치료(Art Therapy)

미술치료는 인간의 조형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동시에 자기 표현과 승화작용을 통해서 자아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자발적인 조형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간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따라서 미술활동은 내담자의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데 유용하며, 궁극적으로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미술작품을 통해 그들의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육과정(Curriculu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보육과정은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에게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킬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과목으로 보육과정의 이해, 구성, 내용,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서 예비교사들에게 현장에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아동음악과 동작(Music & Movement in Early Childhood)

아동음악과동작 아동이 음악과 동작에 친숙함을 가지게되고 정서적 안정감과 심미감을 신장시켜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능력을 기른다.

사회복지조사론(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본 교과목은 사회복지의 과학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사회복지조사방법에 대해 학습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방법의 기초가 되는 조사의 기술, 자료처리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학습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육실습(Parctice in ChildCare)

보육실습은 예비교사들이 정규실습 이전까지의 교사양성교육을 통해 습득한 이론이나 지식을 실제로 경험해 보고 적용해 보는 기회이므로, 유아교육현장에 나갔을 때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수업을 하고 성공적인 실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아동상담(Child Counseling)

아동상담의 기초에 대해 알고, 아동상담의 다양한 기법 중에서 놀이치료, 미술치료, 독서치료에 대해 보다 깊이있게 이론과 실제에 접할 수 있게 하여 상담 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본 교과목의 목표를 둔

다.

건강가정론(The theory)

건강가정의 등장배경과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및 연구동향에 대해 파악한 후 건강가정의 제도, 정책 및 사업에 대해 학습하여 실천적으로 건강가정사업 프로그램과 전달체계를 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실천적 접근방법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교육과 Department of Earlychildhood Education

전공교양

다문화상담의 이론과 실제(The Theory and practice of Multicultural Counseling)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적 인식과 상담 및 치료는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과목은 다문화 상담이론의 개념, 적용과 특정 대상자들 및 상담이론의 전망을 중심으로 다문화 상담이론과 실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다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Multicultural program)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영유아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과목은 다문화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다문화적 교육 내용을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성인학습 및 상담(Adult Learning and Counseling)

성인학습 및 상담분야에서 꼭 다루어야 할 핵심이론들을 중심으로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평생교육학 전공자나 평생교육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물론 교육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자들에게 유용한 교육이 되도록 한다.

전공선택

사회복지개론(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본 과목은 사회복지의 학문적 연구와 실천에 관한 지식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사회복지학을 연구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의 가치와 전문지식으로서의 태도, 사회복지발달과정의 이해와 더불어 실천방법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분야론 등에 대해 알아본다.

아동복지(Welfare With Child)

사회변화에 따른 아동의 권리사상과 가족중심 관점에서 접근하여 아동 및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 정책, 실천방법에 관한 내용을 익히고 실제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실현하는지에 대해 배운다. 또한 Blended Learning를 통한 이론(on-line)과 실무중심(off-line)의 교육을 통해 아동복지실천 기술에 대한 실무를 익힌다.

보육학개론(Introduction for the Childcare)

보육의 이론적 기초를 통해 기본개념과 보육사업 변천을 알아보고, 영유아의 발달과정과 보육환경 구성 및 보육프로그램을 익히고 보육의 본질과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여 보육교사로서의 역량을 갖춘다.

아동발달(Child Development)

본 교과목에서는 아동기까지의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교육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보육과정(Curriculu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보육과정은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에게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킬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과목으로 보육과정의 이해, 구성, 내용,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서 예비교사들에게 현장에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

영유아교수방법(Teaching Method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영유아기는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서 이 시기 유아의 교육에서 유아주변의 성인, 특히 교사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유아교사들은 자신이 맡은 유아들을 어떻게 가르칠 때 최상의 학습효과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에 대해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 평가(Educational Programs for Children)

부모와 유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유아교육현장에 나갔을 때 영유아프로그램과 그것에 맞는 대상 영유아를 접목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아동건강교육(Health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에서 유용하게 참고 할 수 있는 건강지도서이며, 유아교육학과와 아동학과 학생들의 건강교육의 실제와 이론을 습득하는데 목표를 둔다.

놀이지도(Child Literature)

놀이는 유아들이 전인적 발달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생활을 풍부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유아에 관련된 놀이이론과 실제 유아들에게 제공되는 놀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정신건강(Health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인간의 기본적인 발달과 그와 관련된 정신건강의 문제 특히, 신경증 및 정신질환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여 내담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사회복지사로서 알아야 할 역할에 대한 부분을 실제 예를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부모교육(Parent Education)

서양과 우리 나라에서 예로부터 이루어진 부모 교육을 알아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현대 사회에서의 가정에 대하여 살펴본 후, 다양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알아봄으로써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그 의의를 이해한다.

보육실습(Parctice in ChildCare)

보육실습은 예비교사들이 정규실습 이전까지의 교사양성교육을 통해 습득한 이론이나 지식을 실제로 경험해 보고 적용해 보는 기회이므로, 유아교육현장에 나갔을 때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수업을 하고 성공적인 실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아동상담(Child Counselling)

아동상담의 기초에 대해 알고, 아동상담의 다양한 기법 중에서 놀이치료, 미술치료, 독서치료에 대해 보다 깊이있게 이론과 실제에 접할 수 있게 하여 상담 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본 교과의 목표를 둔다.

보육교사론(Education for Young Children)

보육교사론은 교육과 보육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탐색하고, 보육교사의 자질

과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또 보육교사의 긍정적 자아개념 및 효능감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보육교사가 맺는 긍정적인 인간관계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육교사가 경험하는 조직문화의 특성과 적응에 대해 다루고 있다. 더불어 효율적인 교수방법에 대한 내용을 탐구하고 보육교사로서 상호작용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갖추어야 할 지식과 반성적 사고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유아교육론(Introduction)

유아교육 사상가들의 이론에 따른 유아발달 특징, 교육과정에 따른 목표와 내용, 환경을 포함한 유치원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목표로 하여 유아교육의 개념 및 중요성을 이해한다

유아교육과정(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영유아교육과정의 이해와 외국 영유아 교육과정과 우리나라 영유아교육과정,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21세기 영유아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유아언어교육(Language ar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기의 미술은 하나의 언어이다.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도구로써 사용됨을 인식하여 주입식이 아닌 창의성에 바탕이 되는 유아 고유의 표현 방식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인드 교육과 실습교육을 하고자 한다.

유아미술교육(Ar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기의 미술은 하나의 언어이다.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도구로써 사용됨을 인식하여 주입식이 아닌 창의성에 바탕이 되는 유아 고유의 표현 방식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인드 교육과 실습교육을 하고자 한다.

유아관찰 및 실습(Child observ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을 이해하고 관찰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평가방법 및 관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유아음악교육(Music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유아음악교육에 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현장에서 쉽게 유아들에게 음악을 적용하도록 돕는 교과목이다

유아동작교육(Movement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유아동작교육은 영유아가 창의적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 기본적 동작을 익히고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교사들이 기본적인 동작에 대한 개념과 동작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영유아를 교육하게 이끄는 데 필요한 교과목이다.

유아사회교육(Social studi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사회교육은 유아가 현대 상황에 대처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거에 대해 이해하고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및 사회, 경제, 정치제도와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유아과학교육(Science education for children)

유아 과학 교육에 대해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인식과 방법을 제시하여 유아를 위한 과학 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교사의 과학 교육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알아본다.

유아수학교육(Math Science education for children)

유아교사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 유아수학교육의 이론 및 교수방법을 학습하고, 이를 기초로 다양한 놀이 활동을 꾸며 봄으로써 유아의 수학 능력을 이해 할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Adminstration and mandgement of early childhood)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는 유아교육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의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계에서 변화된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총 세 부분으로 구성하여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의 기초 이론과 운영관리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며 학급운영관리를 소개한다.

유아창작공예(Visual ar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현장에서 직접 유아들과 함께 만들기지도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여러가지 창작공예와 미술그리기활동등을 더불어 이해하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위주의 수업으로 현장에서 유아들의 창의적 조형활동을 돕는다.

생태유아교육(Ecolog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생태유아교육의 성격에서부터 생태유아교육과정을 거쳐 생태유아교육의 과제와 전망을 살펴보고 생태유아교육의 교육적 의의와 방향에 대해 인지하고

자 한다.

유아컴퓨터교육(Computer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유아에게 컴퓨터교육을 위한 접근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이론을 담고 있다. 유아에게 컴퓨터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정보화 시대의 사회·생활·교육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찾아내며, 수용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변화와 논쟁을 분석한다. 또한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컴퓨터교육이 주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유아교사론(Teaching materials for young children)

유아교사의 자격, 자질 및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부터 현재 유아교사교육의 정책적 쟁점을 중심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까지 자세한 내용을 다룬다.

유아초등연계교육(Elementar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본 교과는 유아와 아동을 발달적 측면에 있어 이들을 분리하여 생각하기 보다 발달의 연장 선상에 위치해 있음을 인식시키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기악실기(Musical Instrumentals for young children)

학생들의 개인별 피아노 수준을 알아보고 각자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과제곡을 통해 유아들의 동요지도에 필요한 기본적인 피아노 반주 실력을 함양

유아교과교육론(Curriculum Instrumentals for young children)

유아교과교육의 기본적인 개념과 수업, 평가에 대해 이해하고, 구체적인 영역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

유아교과논리 및 논술(Logic and discours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 교사가 유아를 대상으로 읽기, 쓰기, 토론 등을 지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 및 토론 등의 규칙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다.

유아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studies on instructional materials)

유아교육기관의 예비교사와 현장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방법 중에

교과교재 활동과 제작을 중심으로 교과교재의 정의 및 필요성을 다루고, 교육현장의 교과교재를 연령별, 흥미 영역별로 구분하여 교과교재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혔다. 교과교재 제작을 위한 주제별, 단위활동별 제작법을 담아 예비교사 및 현장교사들의 아이디어를 재창출한다.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The Theory and practi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본 교과는 대학생과 교육관계자, 예비교사를 대상으로한 다문화에 대한 기초이론과 다문화교육방안, 실제 담낭화교육 현장현장 사례를 다루는 과목이다.

교육학개론(Introduction to Educational)

특수교육 이해를 위한 교지 소양과목으로 가급적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내용을 구성하여 최신의 특수교육 이론과 우리나라의변화된 특수교육관련제도및 정책을 알고 현장에서 적용하기를 바란다.

교육사회(Educational to Educational)

본 교과는 사회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아울러 이 과목은 현재 교육사회학의 이론에 대한 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과목은 교육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형성 및 도야를 그 목적으로 한다.

교육철학 및 교육사(Educational philisophy psychology)

현행 교육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교육의 역사적·철학적 과정을 탐색 한다.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유추해 본다.

교육심리(Educational Psychology)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영역의 예비교사들이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데 필수적인 교육심리학 과목을 수강할 때 사용할 수있는 내용으로 교육학의 기본학문으로 특히 예비교사들이 교육학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Educational Method and techonlogy)

본 강의는 교수-학습이론에 대한 이해와 교육방법에 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수업과 교사역할, 학생의 지적 호기

심과 탐구심을 자극할 수 있는 수업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Educational Administration & Management)

교육행정과 경영에 관한 기본 개념과 연구 및 이론을 체계적으로 알고, 이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렌즈 구실 뿐 아니라, 실제의 행위를 지도하는 지침이 되고자 한다.

교육과정(Educational curriculum)

영유아교육과정의 이해와 외국 영유아 교육과정과 우리나라 영유아교육과정,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21세기 영유아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특수교육학개론(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특수교육 이해를 위한 교지 소양과목으로 가급적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내용을 구성하여 최신의 특수교육 이론과 우리나라의 변화된 특수교육관련제도 및 정책을 알고 현장에서 적용하기를 바란다.

교직실무(Actual affairs for teaching profession)

교직 실무는 교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교직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실제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이다. 따라서 교직실무에 대한 실제적인 안내를 통해 예비 교사들이 유치원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적이다.

생활지도및상담(Guidance and Counseling)

유아생활지도에 관한 전문적 이론들과 유아생활지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제적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유아생활지도의 개념과 유아발달 및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방법, 기본생활습관과 집단생활 지도, 사회·정서적 문제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다루었다. 특히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지도를 위한 실제 활동지도안과 유아상담을 위한 치료기법 및 부적응 행동 지도를 위한 교사의 상호작용 대화 예를 제시하여 실무적 활용에 도움을 준다

교육과정(Educational curriculum)

영유아교육과정의 이해와 외국 영유아 교육과정과 우리나라 영유아교육과정,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21세기 영유아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

학교현장실습(Parcticum in chid care settings)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유아교사 교육과정과 교육실습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고 기초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둔다.

교육봉사활동(Educational volunteer activities)

봉사활동은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등 조화로운 인성을 기르는데 매우 유용한 교육활동이다. 특히 교육봉사활동은 예비 유아교사들이 교육기관을 돕는 것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원봉사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학습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계열(평생복지전공) Social welfare

전공교양

가족과젠더(Gender & Family)

성과 가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이해하고 건강한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습득함으로써 행복한 가족복지의 실현을 창조해나간다.

전신건강론(Mental Health)

인간의 기본적인 발달과 그와 관련된 정신건강의 문제 특히, 신경증 및 정신 질환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여 내담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사회복지사로서 알아야 할 역할에 대한 부분을 실제 예를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상담 및 치료(Family Counseling & Therapy)

가족상담 및 치료의 특성, 가족체계 이해, 가족상담 및 치료이론 적용사례, 실제 가족상담 및 치료의 과정과 문제유형별 적용, 가족상담자 역할 등을 포함하여 가족상담 및 치료를 깊이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인학습및상담(Adult learning and counseling)

성인 학습자의 제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인학습과 관련된 학습이론, 성인기 발달이론, 앤드라고지론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뿐만 아니라 성인학습자들의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한 실제적인 지도방략의 습득과 그들의 학업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태도와 기술을 함양한다

전공선택

사회복지개론(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본 과목은 사회복지의 학문적 연구와 실천에 관한 지식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사회복지학을 연구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의 가치와 전문지식으로서의 태도, 사회복지발달과정의 이해와 더불어 실천방법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분야론 등에 대해 알아본다.

인간행동과사회환경(Human Behavior & the Social Environment)

사회복지학은 인간중심의 학문으로서 기본적인 사회과학은 물론 인문과학, 자연과학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광범위한 학문으로보다 체계적인 지식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교과목은 인간복지의 발달지원 및 인간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사회복지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for the Disabled)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복잡 다양한 문제와 함께 서비스 대상자들(사회적 약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다. 즉 사회적 약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 및 관리와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학습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장애인복지론(SocialWelfare for then Disabled)

장애인복지론 인간이란 정신적 신체적으로 평정된 상태, 어떤 무엇으로부터도 예속됨없이 자유로우면 서도 편안한 상태를 추구하는존재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의 시초라고 할수있는 심신장애자 복지법은 1981년도에 입법화되고 공포 시행되었으며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을 기점으로 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새로운 인시과 학문적 논의가 시작되면서 기존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되었다

노인복지론(Social Welfare for the Elderly)

고령화사회을 맞아 노인과 노인문제의 현재를 살펴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향후 사회복지사로서 노인복지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노인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한다.

사회복지법제론(Social welfare & Law)

본 교과는 사회복지법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것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회복지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배양하기 위한 교과이다.

사회복지정책론(Social Welfare Policy)

본 강의의 목표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통해 사회복지 정책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추구하는 가치들을 이해하여 그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사회복지 정책의 제이론을 알아보고 그 이론들이 전개된 배경과 원리 그리고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및 방법을 탐색해 본다.

사회복지실천론(Social Work Practice Theories)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 상담가 및 임상가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사회복지실천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 익히고 임상이론 및 실천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안다.

사회복지조사론(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본 교과목은 사회복지의 과학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사회복지조사방법에 대해 학습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방법의 기초가 되는 조사의 기술, 자료처리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학습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Skill &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은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처한 다양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개입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론), 가치 그리고 기술을 재구성하면서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돕는 과목이다.

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지역사회복지란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사회복지실천으로 지역주민들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생활고 등에 대한 변화수단으로, 지역주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에서 경제적, 사회적, 가치적, 문화적으로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데 그 활동목표를 둔다.

사회복지현장실습(Social Work Practice)

사회복지실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사회복지실습에서의 책임성, 현장실습의 슈퍼비전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 철학 및 윤리에 입각한 이론과 기술을 실천 현장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평생교육론(Lifelong Education)

평생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세부적인 영역에 들어가기에 앞서 평생교육의 의미, 대두배경, 필요성 등의 이론적인 내용과 평생교육의 세부적인 영역을 다룸으로서 평생교육이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생교육경영론(Lifelong Education Business Management)

글로벌 환경의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이고 평생학습사회라고 한다면 지식이 바로 자산인 현 시대에 우리는 어느 특정한 시기에만 배워서 살아갈 수 없다. 그리하여 수많은 평생교육기관이 들어서고 커진 규모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고, 다른 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영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서 평생교육에서도 경영의 비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특수교육론(Special Education)

특수교육 이해를 위한 교지 소양과목으로 가급적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내용을 구성하여 최신의 특수교육 이론과 우리나라의 변화된 특수교육관련제도 및 정책을 알고 현장에서 적용하기를 바란다.

여성교육론(Woman Education)

여성교육과 관련된 각종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학교재 겸 교양서. 이 책은 먼저 평생교육과 여성교육 및 여성 생애발달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런 다음 여성평생학습의 시대적 요청, 학습시설, 여성의 사회적 신분 형성 과정, 사회제도 및 학교와 가정에서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 성차별, 성역할의 사회화, 여성의 일과 고용, 평생교육 실천과제 등

평생교육실습(Lifelong Education Practice)

평생교육실습은 예비평생교육사들이 교과서를 통해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평생교육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해 보고 적용해 보는 기회이므로, 평생교육현장에서의 성공적인 실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Lifelong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정치, 사회, 문화, 기술 등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 지속적이고, 빠른 속도로 변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특히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지만, 직업의 수명은 짧아지고, 사회의 변화는 지속되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교육에의 요청이 자신으로부터 또한 외부로부터 점점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교육복지론(Sociology of Whelfare)

교육복지에 대한 개론서. 교육복지의 개념과 목표를 다루고, 한국의 대표적인 교육복지사업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또한 교육복지의 설계, 한국 교육복지의 실재를 다루면서 이명박 정부가 20대 국정전략으로 삼고 있는 '교육복지의 확대'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다룬다.

평생교육방법론(Lifelong Education method)

현대사회의 변화와 요청에 따라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학교교육만으로 사회변화의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듯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평생교육현장에서 평교육을 구현하는 평생교육사들의 임무가 더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현장에서 교수자가 학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방법과 기법에 대하여 이해하고 파악하고자 한다.

상담심리학(Counseling Psycholgy)

최근에 사회가 급속도로 복잡해지면서 사회의 각 분야에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직장, 가정등에서 부적응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여러 단체, 기관에서 전문 상담가를 양성하고 있다. 상담가로서 기본적 소양을 갖추는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상담 이론과 기초적 상담 실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가정론(Family Health)

건강가정의 등장배경과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및 연구동향에 대해 파악한 후 건강가정의 제도, 정책 및 사업에 대해 학습하여 실천적으로 건강가정사업 프로그램과 전달체계를 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실천적 접근방법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과문화(Family & Culture)

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족이 보다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 발전키며 나갈 수 있도록

가족문화조성을 실천하는 현장전문가의 기초를 다진다.

치료맛사지특론(Advanced message Therapy)

귀는 자궁속의 태아가 거꾸로 있는 모양으로 인체가 축소되어 있다, 질병의 호전 및 건강관리에 효과적인 자연치유적인 방법을 학습하기위하여 인체의 여러 기관들과 연관된 귀에서의 혈자리를 배우게 된다.

사회복지계열(보육복지전공) Social welfare

전공교양

가족과젠더(Gender & Family)

성과 가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이해하고 건강한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습득함으로써 행복한 가족복지의 실현을 창조해나간다.

전신건강론(Mental Health)

인간의 기본적인 발달과 그와 관련된 정신건강의 문제 특히, 신경증 및 정신 질환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여 내담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사회복지사로서 알아야 할 역할에 대한 부분을 실제 예를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상담 및 치료(Family Counseling & Therapy)

가족상담 및 치료의 특성, 가족체계 이해, 가족상담 및 치료이론 적용사례, 실제 가족상담 및 치료의 과정과 문제유형별 적용, 가족상담자 역할 등을 포함하여 가족상담 및 치료를 깊이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놀이지도(Child Literature)

놀이는 유아들이 전인적 발달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생활을 풍부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유아에 관련된 놀이이론과 실제 유아들에게 제공되는 놀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전공선택

사회복지개론(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본 과목은 사회복지의 학문적 연구와 실천에 관한 지식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사회복지학을 연구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의 가치와 전문지식으로서의 태도, 사회복지발달과정의 이해와 더불어 실천방법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분야론 등에 대해 알아본다.

인간행동과사회환경(Human Behavior & the Social Environment)

사회복지학은 인간중심의 학문으로서 기본적인 사회과학은 물론 인문과학, 자연과학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광범위한 학문으로보다 체계적인 지식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교과목은 인간복지의 발달지원 및 인간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사회복지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for the Disabled)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복잡 다양한 문제와 함께 서비스 대상자들(사회적 약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다. 즉 사회적 약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 및 관리와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학습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장애인복지론(Social Welfare for the Disabled)

장애인복지론 인간이란 정신적 신체적으로 평정된 상태, 어떤 무엇으로부터도 예속됨없이 자유로우며 서도 편안한 상태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의 시초라고 할수있는 심신장애자 복지법은 1981년도에 입법화되고 공포 시행되었으며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을 기점으로 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학문적 논의가 시작되면서 기존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되었다

노인복지론(Social Welfare for the Elderly)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과 노인문제의 현재를 살펴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향후 사회복지사로서 노인복지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노인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한다.

사회복지법제론(Social welfare & Law)

본 교과는 사회복지법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것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회복지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배양하기 위한 교과이다.

사회복지정책론(Social Welfare Policy)

본 강의의 목표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통해 사회복지 정

책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추구하는 가치들을 이해하여 그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사회복지 정책의 제이론을 알아보고 그 이론들이 전개된 배경과 원리 그리고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및 방법을 탐색해 본다.

사회복지실천론(Social Work Practice Theories)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 상담가 및 임상가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사회복지실천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 익히고 임상이론 및 실천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안다.

사회복지조사론(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본 교과목은 사회복지의 과학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사회복지조사방법에 대해 학습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방법의 기초가 되는 조사의 기술, 자료처리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학습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Skill &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은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처한 다양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개입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론), 가치 그리고 기술을 재구성하면서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돕는 과목이다.

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지역사회복지론은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사회복지실천으로 지역주민들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생활고 등에 대한 변화수단으로, 지역주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에서 경제적, 사회적, 가치적, 문화적으로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데 그 활동목표를 둔다.

사회복지현장실습(Social Work Practice)

사회복지실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사회복지실습에서의 책임성, 현장실습의 수퍼비전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 철학 및 윤리에 입각한 이론과 기술을 실천현장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아동발달(Child Development)

본 교과목에서는 아동기까지의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교육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보육학개론(Introduction for the Childcare)

보육의 이론적 기초를 통해 기본개념과 보육사업 변천을 알아보고, 영유아의 발달과정과 보육환경 구성 및 보육프로그램을 익히고 보육의 본질과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여 보육교사로서의 역량을 갖춘다.

아동복지론(Welfare With Child)

사회변화에 따른 아동의 권리사상과 가족중심 관점에서 접근하여 아동 및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 정책, 실천방법에 관한 내용을 익히고 실제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실현하는지에 대해 배운다. 또한 Blended Learning를 통한 이론(on-line)과 실무중심(off-line)의 교육을 통해 아동복지실천 기술에 대한 실무를 익힌다.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

(Program Development & Evaluation for Infant)

부모와 유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유아교육현장에 나갔을 때 영유아프로그램과 그것에 맞는 대상 영유아를 접목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보육과정(Curriculu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보육과정은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에게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킬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과목으로 보육과정의 이해, 구성, 내용,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서 예비교사들에게 현장에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보육실습(Parctice in ChildCare)

보육실습은 예비교사들이 정규실습 이전까지의 교사양성교육을 통해 습득한 이론이나 지식을 실제로 경험해 보고 적용해 보는 기회이므로, 유아교육현장에 나갔을 때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수업을 하고 성공적인 실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아동음악과 동작(Music & Movement in early Childhood)

아동음악과동작 아동이 음악과 동작에 친숙함을 가지게되고 정서적 안정감과 심미감을 신장시켜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능력을 기른다.

아동영양학(dietetics for Children)

영유아기는 두뇌발달, 신체운동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등 다양한 발달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므로 이 시기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양공급방법과 발달에 적합한 환경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건강가정론(Family Health)

건강가정의 등장배경과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및 연구동향에 대해 파악한 후 건강가정의 제도, 정책 및 사업에 대해 학습하여 실천적으로 건강가정사업 프로그램과 전달체계를 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실천적 접근방법및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과문화(Family & Culture)

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족이 보다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 발전키며 나갈 수 있도록 가족문화조성을 실천하는 현장전문가의 기초를 다진다.

치료말사지특론(Advanced message Therapy)

귀는 자궁속의 태아가 거꾸로 있는 모양으로 인체가 축소되어 있다, 질병의 호전 및 건강관리에 효과적인 자연치유적인 방법을 학습하기위하여 인체의 여러 기관들과 연관된 귀에서의 혈자리를 배우게 된다.

생활지도및아동상담(Life Guidance & Child Counseling)

태어나면서부터 성인까지 정신적 안정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누구나의 소망일 것이다. 그러나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만 또 어떻게 후세대를 양육해야만 잘 적응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이러한 과제에 발맞추기 위하여 처음에 의도했던 바는 유아동 상담에만 국한하였으나 이내 유아에서 성인까지의성공적인 적응에 초점을 두었다. 아동과 성인,부모의 입장에서 상담기법을 자세히 다룬다.

방과후아동지도론(Life Guidance & child guidance)

방과후 아동지도에 필요한 기술, 지식, 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룬 책. 방과후 아동지도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설명

방과후실습(After-school practice)

아동지도의 의의와 철학 및 방과후 아동지도에 있어 필요한 기술을 상세히 설명하고 방과후 아동지도의 방향을 제시했다. 방과후 아동지도를 위한 활동 형태들을 정리한다.

사회복지상담과 Dept. of Social Welfare and Counseling

전공교양

아동상담(Child Counseling)

아동상담의 기초에 대해 알고, 아동상담의 다양한 기법 중에서 놀이치료, 미술치료, 독서치료에 대해 보다 깊이있게 이론과 실제에 접할 수 있게 하여 상담 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본 교과목의 목표를 둔다.

상담심리(Counseling Psychology)

최근에 사회가 급속도로 복잡해지면서 사회의 각 분야에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직장, 가정등에서 부적응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여러 단체, 기관에서 전문 상담가를 양성하고 있다. 상담가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상담 이론과 기초적 상담 실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가정론(Introduction to Healthy Families)

건강가정의 등장배경과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및 연구동향에 대해 파악한 후 건강가정의 제도, 정책 및 사업에 대해 학습하여 실천적으로 건강가정사업 프로그램과 전달체계를 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실천적 접근방법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과후아동지도론(After-School Educare Child a Guidance)

방과후 아동지도에 필요한 기술, 지식, 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룬 책. 방과후 아동지도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설명

전공선택

사회복지조사론(Research Methods for SocialWelfare)

본 교과목은 사회복지의 과학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사회복지조사방법에 대해 학습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방법의 기초가 되는 조사의 기술, 자료처리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학습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개론(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본 과목은 사회복지의 학문적 연구와 실천에 관한 지식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사회복지학을 연구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의 가치와 전문지식으로서의 태도, 사회복지발달과정의 이해와 더불어 실천방법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분야론 등에 대해 알아본다.

인간행동과사회환경(Human Behavior & the Social Environment)

사회복지학은 인간중심의 학문으로서 기본적인 사회과학은 물론 인문과학, 자연과학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광범위한 학문으로보다 체계적인 지식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교과목은 인간복지의 발달지원 및 인간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사회복지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for the Administration)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복잡 다양한 문제와 함께 서비스 대상자들(사회적 약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다. 즉 사회적 약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 및 관리와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학습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가족복지론(Social Work with Families)

사회변화와 함께 제도, 풍습, 법률, 오락, 산업 등 여러 분야도 이에 맞추어 급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가장 중요한 변화로 결혼지체, 출산율저하, 이혼율 증가, 다문화가정의 급증과 관련된 문제들은 가족을 둘러싼 변화들이다. 이러한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한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복지 차원의 대책들의 마련이 필요하다.

노인복지론(Social Service For The Elderly)

고령화사회를 맞아 노인과 노인문제의 현재를 살펴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향후 사회복지사로서 노인복지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노인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한다.

사회복지법제론(Social welfare and Law)

본 교과는 사회복지법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것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회복지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배양하기 위한 교과이다.

사회복지실천론(Theories Of Social Welfare Practice)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 상담가 및 임상가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사회복지실천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 익히고 임상이론 및 실천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안다.

사회복지정책론(Social Welfare Policy)

본 강의의 목표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통해 사회복지 정책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추구하는 가치들을 이해하여 그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사회복지 정책의 제이론을 알아보고 그 이론들이 전개된 배경과 원리 그리고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및 방법을 탐색해 본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Skill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사회복지실천기술론은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처한 다양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개입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론), 가치 그리고 기술을 재구성하면서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돕는 과목이다.

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and Practice)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사회복지실천으로 지역주민들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생활고 등에 대한 변화수단으로, 지역주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에서 경제적, 사회적, 가치적, 문화적으로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데 그 활동목표를 둔다.

사회복지현장실습(Social Work Parctice)

사회복지실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사회복지실습에서의 책임성, 현장실습의 슈퍼비전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 철학 및 윤리에 입각한 이론과 기술을 실천

현장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아동발달(child Development)

본 교과목에서는 아동기까지의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교육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전신건강론(Mental Health)

인간의 기본적인 발달과 그와 관련된 정신건강의 문제 특히, 신경증 및 정신 질환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여 내담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사회복지사로서 알아야 할 역할에 대한 부분을 실제 예를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복지론(Child Welfare)

사회변화에 따른 아동의 권리사상과 가족중심 관점에서 접근하여 아동 및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 정책, 실천방법에 관한 내용을 익히고 실제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실현하는지에 대해 배운다. 또한 Blended Learning를 통한 이론(on-line)과 실무중심(off-line)의 교육을 통해 아동복지실천 기술에 대한 실무를 익힌다.

놀이지도(Play & Early Childhood Education)

놀이는 유아들이 전인적 발달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생활을 풍부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유아에 관련된 놀이이론과 실제 유아들에게 제공되는 놀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동음악과 동작(Child Music & Attention)

아동음악과동작 아동이 음악과 동작에 친숙함을 가지게되고 정서적 안정감과 심미감을 신장시켜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능력을 기른다.

보육과정(Curriculu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보육과정은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에게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킬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과목으로 보육과정의 이해,구성,내용,운영,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서 예비교사들에게 현장에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보육실습(Practicum in Child Care)

보육실습은 예비교사들이 정규실습 이전까지의 교사양성교육을 통해 습득한 이론이나 지식을 실제로 경험해 보고 적용해 보는 기회이므로, 유아교육현장에 나갔을 때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수업을 하고 성공적인 실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아동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for Children)

보육시설이나 기관의 아동에게 주어진 유해환경이나 안전에 대해 최소한의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를 함으로써 안락한 환경속에서 학습을 할수있도록 배려하며 아동 스스로 안전에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함이 교육목적이있다

보육학개론(Introduction for the Child care & Eduction)

보육의 이론적 기초를 통해 기본개념과 보육사업 변천을 알아보고, 영유아의 발달과정과 보육환경 구성 및 보육프로그램을 익히고 보육의 본질과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여 보육교사로의 역량을 갖춘다.

아동문학(Children's Literature)

아동문학 유.아동 문학의 이론적 기초와 문학교육의 접근, 유아문학의 종류, 유아동 문학의 실재를 통해 유아동문학교육의 대한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수립한다.

가족상담및치료(Family Counseling & Therapy)

가족상담 및 치료의 특성, 가족체계 이해, 가족상담 및 치료이론 적용사례, 실제 가족상담 및 치료의 과정과 문제유형별 적용, 가족상담자 역할 등을 포함하여 가족상담 및 치료를 깊이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족과문화(Family & Culture)

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족이 보다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 발전키며 나갈 수 있도록 가족문화조성을 실천하는 현장전문가의 기초를 다진다.

학교사회복지론(School Social Work)

학교사회복지론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라는 실천영역에서 학교의 본

질적인 목적인 교육에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총괄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사회복지사가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의 중재 역할을 하면서 학교제도 안에서 학생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치료하고 예방하여 건전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원리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가족과젠더(Family and Gender)

성과 가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이해하고 건강한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습득함으로써 행복한 가족복지의 실현을 창조해나간다.

방과후실습(After-school Educare Practice)

아동지도의 의의와 철학 및 방과후 아동지도에 있어 필요한 기술을 상세히 설명하고 방과후 아동지도의 방향을 제시했다. 방과후 아동지도를 위한 활동 형태들을 정리한다.

안경광학과 Department of Optometry

전공교양

기초생물학(basic Biology)

생물의 생활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 원리를 명백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생리학 중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을 숙지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이다. 또한 일반적인 생명현상의 기본적 법칙을 주목적으로 연구하는 생리학 총론과 생체의 각 기관의 작용을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생리학 각론으로 분류하여 학습한다.

안경수학(Optical Mathematics)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처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굴절검사는 안경사가 평생을 습득하고 반복하게 될 중요한 기본이다. 정상적인 처방을 하기 위한 전체적인 피검자의 문진에서부터 기본검사 처방 조제를 하기 위해서는 비정시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형태와 증상 교정원리를 익힘으로써 굴절검사에 더욱 충실할수 있는 바탕이 된다. 본 과목에서는 비정시에 대하여 심도 있게 학습하고 굴절검사의 기본에 대해 익히는데 목적이 있다.

콘택트렌즈상품지식(Information of Contact lens Products)

콘택트렌즈 사용 인구의 증가에 따라 렌즈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방법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 가운데 렌즈가 자신의 눈(각막)의 형태와 일치하는지, 각막에 산소 공급은 원활히 되는지, 눈물 순환은 잘 이루어지는지 등 좋은 렌즈의 조건을 충족 시킬수 있는 렌즈는 어떤 종류의 렌즈 인지 등 기본적인 상품지식을 습득한다.

안경원경영및회계(Optical Shop Management&Accountion)

급속한 환경변화속에서 안경원 경영에 필요한 세무관리 마케팅 및 서비스 관리와 경영에 관련된 개념적이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필요지식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전공선택

물리광학(Physical Optics)

빛이 가진 파동적인 성질과 전자기적 특성인 회절, 간섭 및 편광 등을 학습하여 빛의 속성을 이해하고 광학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시기해부 및 생리학1(Anatomy&Physiology of the eye1)

눈에 대한 해부학과 발생학 및 안구와 안구내용물의 구조 및 특징, 기능 또한 신경과 혈액공급, 자율신경지배에 대해 학습한다

안경조제가공학1(Ophthalmic Dispensing1)

안경을 조제가공(調製加功)하여 판매하는 전문직 종사자인 안경사(眼鏡士)의 기본적인고 핵심적인 책무는 과학적 이론에 따른 올바른 안경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이론에 바탕을 둔 정확한 안경 만들기에 목적을 두고 있고, 나아가 세계 수준의 보건의료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함이다.

안경조제가공학실습1(Ophthalmic Dispensing1&Practice1)

안경의 조제 및 가공의 개요와 흐름을 이해 수동옥습기, 종이형판, 메탈테, CR렌즈, 렌즈미터기를 이용한 근시안경 조제를 실습한다.

안경처방서 해석 및 연습(Ophthalmic Optics Terminolgy)

안경사들이 실무에서 전과정의 모든 기본사항부터 세밀한 사항들을 작성하는 것이 처방서이다. 처방서 작성과정은 인적사항과 직업 그리고 문진부터 고객의 기초적인 검사 내용과 검사 과정의 기술 내용 그리고 최종처방, 프레임의 선택사항, 안경렌즈의 종류, 안경 가공의 주의사항 설계시 주의점 등 다양한 자료들이 총 포함된 것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이러한 과정들에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부터 기초적인 지식들을 모두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다

안경학개론1(Introduction of Visual Optics)

안경학의 입문과정으로 시기능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안과학, 눈의 광학적인 원리를 익히는 안광학, 시기능검사와 양안시이상, 안경을 가공하여 피팅에 이르는 조제가공학 등 실기 과목을 포함한 눈의 전반적인 특성과 기능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기초굴절검사이론(Fundamenteal of Vision Training)

포뮬터를 이용해서 자각적 굴절검사를 연습한다

굴절검사에는 자각적 검사방법과 타각적 검사방법을 병행하여 기초적인 굴절검사를 연습한다.

기초굴절검사실습(Practice of Refraction Examination1)

안경을 조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처방서 해석과 굴절검사가 필요하다 이에 시력검사중 기본적인 굴절검사를 학습한다

시기해부및생리학2(Anatomy&Physiology of the eye2)

안구의 구조와 안내용물, 안부속기 및 시신경과 색각, 광각, 양안시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학습한다.

연구방법론1(Research Methodology1)

안경광학 전공자를 위한 통계분석, 연구설계 등을 학습하도록 한다.

안경재료학1(Ocular Optics Materials1)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경테와 렌즈의 특성 및 제조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안경조제가공학2(Ophthalmic Dispensing2)

안경을 조제하는데 필요한 이론을 습득한다.

안경조제가공학실습2(Ophthalmic Dispensing1&Practice1)

정확한 안경을 조제하고 개인적인 테크닉을 학습한다.

안경학개론2(Introduction of Visual Optics2)

안경광학의 전반적인 분야의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기하광학(Geometrical Optics)

기하광학은 망원경·현미경·사진렌즈·분광기 및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렌즈·거울·프리즘 등 광학기기의 성질을 취급하는 광학의 한 분야다.

안경광학(Ocular Optics)

안경광학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눈의 광학적 기능을 이해하며 더 나아가 비정시의 상태와 광학적 변화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안경재료학2(Ocular Optics Materials2)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경테와 렌즈의 특성 및 제조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안경조제가공학3(Ophthalmic Dispensing3)

안경을 조제가공(調製加功)하여 판매하는 전문직 종사자인 안경사(眼鏡士)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책무는 과학적 이론에 따른 올바른 안경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이론에 바탕을 둔 정확한 안경 만들기에 목적을 두고 있고, 나아가 세계 수준의 보건의료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함이다.

안경조제가공학실습3(Ophthalmic Dispensing1^Practice3)

정확한 조제가공(調製加功)하여 조제하고 개인적인 테크닉을 학습한다.

안과학(Ophthalmology)

눈의 일반적인 구조, 특성을 이해하고 시기능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시기능검사와 양안시이상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

안광학기기학1(Ocular Optics Instrument)

안경사들에게 굴절검사와 안기능검사의 기본이 되는 안광학기기의 이해는 필수적이다. 많은 기기들의 광학적인 원리와 사용법 명칭을 알아보고 학습하고자 한다. 안광학기기의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전달함으로써 특징과 사용법을 이해하고 익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본적인 검사장비와 측정장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 과목의 학습 목표이다.

안기능검사및실습1(Visual Function&Practice1)

우리눈의 여러가지 기능과 시력검사를 통해 안구에 대해 자세히 공부한다 이론과실습을 통해 각자의 테크닉을 연마한다

콘택트렌즈실습1(Practice of Contact Lens1)

정확한 소프트 및 하드 Contact Lens B.C(각막곡률)를 처방하여 쾌적한 착용감과 누액교환을 원활하게 하여 각막생리에 필요한 산소공급을 충분하게 하고 사용목적에 따른 정확한 도수처방과 사용하는 동안 관리방법을 지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콘택트렌즈학1(Contact Lens1)

안경원 및 안과에서의 임상실무와 안경사국가고시를 대비하여 소프트콘택트 렌즈 및 RGP 렌즈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론을 학습한다.

기하광학2(Geometrical Optics2)

안경광학에 대한 기초지식인 기하광학을 학습한다

안경광학2(Ocular Optics2)

안경광학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눈의 광학적 기능을 이해하며 더 나아가 비정시의 상태와 광학적 변화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안경조제가공학4(Ophthalmic Dispensing4)

안경을 조제하는데 필요한 이론습득한다.

안경조제가공학실습4(Ophthalmic Dispensing1&Practice4)

정확한 안경을 조제하고 개인적인 테크닉을 학습한다

안과학2(Ophthalmology2)

눈알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작용, 기능 등을 학습한다.

안광학기기학2(Ocular Optics Instrument)

안경사들에게 굴절검사와 안기능검사의 기본이 되는 안광학기기의 이해는 필수적이다. 많은 기기들의 광학적인 원리와 사용법 명칭을 알아보고 학습하고자 한다. 안광학기기의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전달함으로써 특징과 사용법을 이해하고 익히도록 하는 것이목적이다. 기본적인 검사장비와 측정장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하는 것이 이 과목의 학습 목표이다.

안기능검사및실습2(Visual Function&Practice2)

시력검사를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검사를 하고 우리눈의 다양한 기능을 알아보고 검사법을 배운다

연구방법론2(Research Methodology2)

안경광학 전공자를 위한 심도있는 통계분석, 연구설계 등을 학습하도록 한

다.

콘택트렌즈실습2(Practice of Contact Lens2)

임상실무와 안경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대비하여 소프트콘택트렌즈 및 RGP 렌즈를 관리, 처방법을 실습한다.

현장실습1(Field Practice1)

이론적 학습을 배경으로 현장에 실무투입되어 현장과 이론의 접목을 시도한다. 적극적인 인성교육과 실무교육을 병행한다.

안경광학3(안경광학(Ocular Optics3)

눈의 광학적 기능을 이해하며 더 나아가 비정시의 상태와 광학적 변화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안기능검사및실습3(Visual Function&Practice3)

양안시 이상중 사위 검사법에 대해 검사법을 습득하고 연습한다

안질환1(Eye Diseases1)

시기해부 및 생리학을 기본으로 알고 눈의 각 부분에 해당되는 안과 질환에 대해서 학습한다.

양안시기능학(Binocular vision1)

안기능검사학의 이론과 실습과목을 바탕으로 양안시기능에 대한 심도깊은 이론과 검사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임상안과학(Clinical Ophthalmology)

안과학, 시기해부생리학 과목을 바탕으로 안경사 국가고시와 임상실무를 위한 심도깊은 지식을 학습한다.

임상안광학(Clinical Ocular Optics)

안경원에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검사인 실기편과 각 검사의 배경, 기본적인 이론, 공식의 증명과 유도 및 구체적 해설과 예제를 이해한다.

고급조제가공학및실습1(Advanced Ophthalmic Dispensing1&Practice1)

정확한 안경을 조제하기 위해 처방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여 편안하고 정확안경을 조제하기 위해 각자의 기술을 연마하고 습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안경조제 및 조정학특론(Spectacles Fitting)

안경조제 가공의 심화과정으로서 안경조제 가공을 전반적인 이해와 조정학 파트를 다루어 본다.

콘택트렌즈학2(Contact Lens2)

최근 가장 안전하고 새로운 렌즈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산소가 잘 투과하는 RGP 하드콘택트렌즈에 관한 소재, 관리 및 처방 관한 다양한 콘택트렌즈 종류 만큼 의학적 지식과 합병증에 관련하여 지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장실습2(Field Practice2)

이론적 학습을 배경으로 현장에 실무투입되어 현장과 이론의 접목을 시도한다. 적극적인 인성교육과 실무교육을 병행한다.

상품지식(Information of Products)

기본적인 상품지식을 습득한다.

고급검안학(Advanced Optometry)

검안학의 이해와 발전방향에 관하여 학습한다.

안질환2(Eye Diseases2)

안과학과 시기해부생리학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안질환의 증상과 특징, 치료 및 예방에 대하여 학습한다.

의료관계법규(Medical Safety)

의료관계법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고취시키며 보건의료사업 수행 시 필요한 의료관계법규를 정확히 이해, 적용,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고급안경광학(Advanced Clinical Ocular Optics)

눈의 광학적 기능을 이해하며 더 나아가 비정시의 상태와 광학적 변화에 대

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고급조제가공학및실습2(Advanced Ophthalmic Dispensing1&Practice2)

정확한 안경을 조제하기위해 처방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여 편안하고 정확안경을 조제하기 위해 각자의기술을 연마하고 습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고급콘택트렌즈 이론및실습(Advanced Contact Lens Optics)

정확한 소프트 및 하드 Contact Lens B.C(각막곡률)를 처방하여 쾌적한 착용감과 누액교환을 원활하게 하여 각막생리에 필요한 산소공급을 충분하게 하고 사용목적에 따른 정확한 도수처방과 사용하는 동안 관리방법을 지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응급구조과

전공선택

인체생리학(Physiology)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의 원리와 조절작용을 파악하고 생체 항상성의 유지 기전을 연구하는 학문인 생리학은 특히 보건의료분야에 필수적인 학문으로 인체 주요 장기, 근육, 신경계 등의 기능을 공부하여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인체해부학(Anatomy)

의료분야에서 가장 기본이며 꼭 필요한 학문인 해부학을 통하여 의료인으로서 필요한 기본지식의 습득과 교육을 목표로하였습니다. 서론, 세포및조직, 뼈대계통, 관절계통, 근육계통, 순환계통, 소화계통, 호흡계통, 신경계통, 감각계통, 비뇨계통, 생식계통, 내분비생 등으로 분류하여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 진행은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PPT를 작성후 이를 이용하여 이론수업으로 진행한다.

의학용어(Medical terminology)

의학용어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어근의 어원적 분석을 통하여 어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며 나아가서 새로운 단어의 구조와 의미를 추측할 수 있도록 한다.

응급구조학개론(Introduction to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21세기 사회 안전망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인 응급구조사의 업무, 권리와 의무, 기본 및 전문응급처치를 알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응급구조사가 이해하기 쉬운 현장사진을 활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기본응급처치학 및 실습(Practice of Basic emergency care)

응급의료의 중요한 부분인 현장단계 및 이송단계, 병원단계에서 시행해야할 응급처치와 응급구조사에 관한 내용 다룰것이며, 응급환자의 일차치료를 담당하는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습득해야 할 응급치료에 대한 기초 의학 지식에서부터 각 질환 별 응급치치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개요를 설명한다.

기본외상처치학 및 실습(Practice of Basic trauma life support)

다양한 외상 환자를 처치하는 기본 방법을 숙지하도록 한다. 외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대처 방법을 구분해서 숙지하도록 한다.

기본심폐소생술 및 실습(Practice of Cardiopulmonary reuscitation)

응급환자의 현장응급처치는 직접 사고자나 환자를 다루는 119구급 소방대원이 가장 많이 출동하는 현장사고의 데이터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응급환자의 유형에 따른 처치 자료를 기반으로 기초를 닦는 과목이다.

병리학(Pathology)

주요 질병에 대한 병태생리와 기전을 이해하고 숙지해서 응급구조사가 갖추어야 할 기초의학 상식 중 병태생리의 기본 지식을 갖추는데 중점을 둔다.

약리학(Pharmacology)

인간의 질병을 다스리는 약의 역사와 기능, 약리 작용을 이해하고 다양한 응급상황에서 적용할 적절한 약의 제시와 대응에 대해 배운다

응급의학총론(Introduction to paramedic emergency care)

급의료의 중요한 부분인 현장 및 이송 중에 시행해야 할 응급처치와 응급구조사에 관한 내용 및 응급환자의 일차치료를 담당하는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습득해야 할 응급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 지식에서부터 각 질환 별 응급처치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개요를 설명함.

응급환자관리학 및 실습(Practice of management of emergency patient)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기본적이고 전문적인 응급환자관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술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함.

응급환자평가 및 실습(Practice of patient assessment)

응급의료의 중요한 부분인 현장 및 이송 중에 시행해야 할 응급처치와 응급구조사에 관한 내용 및 응급환자의 일차치료를 담당하는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습득해야 할 응급치료에 대한 기초 의학 지식에서부터 각 질환 별 응급처치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개요를 설명함.

내과응급처치학 및 실습(Practice of Internal medical emergency care)
내과적질병과 응급처치 이론과 술기

공중보건학(Public health)

공중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및 상호관계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 의식 수준을 향상하고, 보건전문인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며, 향후 국가고시에 대비한 기초 지식을 다진다.

소방학개론(Introductin to fire service)

소방공학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하여 장차 소방인으로서의 기본소양으로 삼고 소방공무원 시험등 각종 시험에 도움을 주고자 함

수상안전 및 실습(Practice of Water life guard)

수상 안전의 이해 수상 기본 수영 기술의 이해 및 숙달 수상 구조 기술의 이해 및 훈련 숙달

전문외상처치학 및 실습(Practice of Advanced trauma life support)

1급 응급구조사가 알아야 하는 전문적인 외상 처치술 방법과 요령을 숙지하고 다양화되는 외상의 종류와 빈번히 발생하는 외상의 기전을 이해한다.

대량재해응급(Multiple disaster)

지구 온난화 등 새로운 자연환경과 점점 다양해지는 재난 등으로 발생하는 대량환자에 대한 재난의료대책과 PTSD(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방지

재난관리론(Disaster management)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과 우리나라 재난관리에관한 법령을 익힘으로서 장차 소방공무원 준비에 도움을 주고 응급구조사로서의 기본 소양을 기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소방실무론(Practice of fire service)

소방조직, 연소 및 화재이론, 소화이론, 소방시설의 종류 및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

병원행정학(Hospital administration)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학과 개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응급구조사로서 술기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전문지식을 갖추기 위함이다.

환경응급학(Environmental emergencies)

환경으로 인한 여러 응급 상황의 기전을 이해하고 각각에 대한 응급처치를 파악 하여 현장및 이송, 병원에서의 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전문응급처치학 및 실습1(Practice of Paramedic emergency care1)

기존의 전문응급처치 내용과 함께 새로운 기구와 술기, 중환자 이송, 생물 테러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특수 상황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서비스 체계를 알 수 있다.

전문심장처치학 및 실습1(Practice of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1)

기본 심폐소생술을 다시 익히고, 1급 응급구조사가 전문적인 심장 소생술에서 익혀야 할 기본지식과 술기를 터득한다. 특히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의 소생술 방법에 있어 장단점과 전문심장구조술의 특징들을 이해하며, 2010년 미국심장협회 가이드라인 변경기준을 숙지한다.

전문응급처치학 및 실습(Practice of Paramedic emergency care2)

기본 외상 처치술과 일반응급처치에 1급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보다 더 전문적인 응급처치 기술과 방법,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전문 응급구조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노력한하고 해당 사례를 분석하고 토론한다.

전문심장처치학 및 실습2(Practice of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2)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뿐만 아니라 대부분 응급환자의 치료초기에 우선시되어야 하는 응급처치를 익히고자 함.

인명구조 및 실습(Practice of Lifesaving)

개인안전 및 현장안전관리에 대해서 학습하고 사례별 인명구조학에 대한 이론적 학습하고 실습을 통하여 인명구조의 기본요령을 습득한다.

의료관계법규(Law of Medical care)

보건의료인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의료법과 의료관계 법류를 이해함으

로써 향후 학습하게 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다진다.

소방법규(Law of Fire service)

소방의 역사, 소방행정 제도 및 현행 소방관련 법령을 개략적으로 익힘으로써 장차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 소양으로 삼고 소방공무원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함

심전도개론(Introduction to Electrocardiography)

심장의 해부 및 전기적 흐름을 이해한다 심장의 리듬이 체외에서 그려진 그래프와 관계를 이해한다 심전도의 기초를 숙지하고 나아가 기본적인 판독과 진단요령을 이해한다.

소방안전관리론(Fire safety management)

안전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소방과 관련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공부함으로써 소방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기르고 소방공무원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함

병원임상실습1(병원실습)(Clinical practice training1)

병원임상실습을 통하여 현장실무능력을 증대시키고자 함.

병원임상실습2(병원실습)(Clinical practice training2)

병원임상실습을 통하여 현장경험을 쌓고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여 문제 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다.

소아전문응급처치학 및 실습(Practice of Advanced pediatric life support)

소아 응급환자의 특징과 소아환자를 대하는 방법과 요령, 특히 소아질환의 대처방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다.

스포츠응급의학(Emergency care of sports)

스포츠 현장의 응급 상황 대처에 대한 이해

응급차량장비운영(Equipment management of Emergency vehicle)

구급차량의 체계적인 관리법과 운영 및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 표준화를 이해하고 구급차량 사고의 변수 인간적 요인, 차량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매개적 요인을 숙지하고 이해

응급중독학(Intoxication emergenced)

중독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및 병원내에서의 전문적인 술기를 습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응급무선통신(Emergency radio communication)

재난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될 정보통신의 전문 지식이 없는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개념부터 재난 및 응급무선통신 실무까지 간결하고 평이하게 설명한다. 특히 재난대응의 전담부서인 소방방재 부문의 정보화에 대하여는 업무의 이해를 넓히는 차원에서 영역별로 강의를 진행하며, 재난통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911테러사건시 통신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한다.

시나리오실습(Practice of Scenario)

전문응급구조사를 위한 현장 시나리오 실습을 통해 현장 적응 능력 향상과 돌발적인 현장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며, 안전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시나리오 실습

특수상황응급처치학(Special situation Emergency care)

응급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특수 상황에 대한 인지방법과 대처방법에 대해 알고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한다.

구급차동승실습(소방서실습)(First aid field practice training)

구급차 동승실습을 통하여 현장실무능력 증대시키고자 함.

노인응급의학(Geriatric emergency care)

노인환자의 응급상황및 처치술

응급의료관계법규(Emergency medical law)

1급 응급구조사가 실무에 임할 때 가장 관련이 많은 응급의료관계법규를 숙지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한다.

산과응급처치학(OBGY emergency care)

부인과와 산과 질환의 응급상황 유형을 숙지하여 향후 1급 응급구조사로서의 대처 방안과 기술에 대해 익힌다.

종합응급처치술기실습(Practice of Total emergency care skills)

응급처치 장비의 숙달과 장비 사용절차를 익힘으로써 현장에서의 적응이 용이토록함.

기초의학특론(Basic medicine support)

해부학, 생리학, 약리학, 병리학, 공중보건학 등 기초 의학을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문제풀이 학습을 통해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 대비한다.

법의학(Forensic medicine)

법과 관련된 의학적 문제를 연구하고 학습한다.

체력평가(Estimation of physical fitness)

기초체력 향상과 실기평가를 대비한다.

작업치료과

전공선택

의학용어(Medical terminology)

의학용어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어근의 어원적 분석을 통하여 어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며 나아가서 새로운 단어의 구조와 의미를 추측할 수 있도록 한다.

해부학1(Anatomy1)

해부학은 사람의 구조와 형태를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이며 필수과목이다. 해부학에 대한 기초를 바탕으로 업치료사로써 임상에 적용하고자 하는데 학습 목표를 둔다. 해부학은 연구대상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 중 사람 몸의 복잡한 구조와 형태를 연구하는 학문을 사람해부학이라고 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사람해부학을 중심으로 학습하고자 한다.

작업치료학(Introduction of Occupational Therapy)

재활의학에서 중요한 치료의 한 부분이며 치료목적이 있는 활동을 환자에게 주어 이 활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며 장애를 예방하고 심리 및 정신적 장애의 평가에 도움을 주며 또한 치료와 훈련을 할 수 있는 기술이며 학문인 작업치료학에 대한 개괄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이학적검사 및 실습(Physical Examination & practice)

작업치료의 과정, 작업치료 용어, 이론, 임상적 추론 등을 이해하고 작업치료에서 사용되는 평가 도구 및 평가방법을 습득하고 이해한다.

재활의학(Rehabilitation medicine)

장애인의 신체 및 정서적 욕구를 알고 가정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원 이용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최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하도록 돕는 방법을 습득케 한다.

생리학1(Physiology1)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의 원리와 조절작용을 파악하고 생체 항상성의

유지 기전을 연구하는 학문인 생리학은 특히 보건의료분야에 필수적인 학문으로 인체 주요 장기, 근육, 신경계 등의 기능을 공부하여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재활승마치료(Hippotherapy)

재활영역의 한 분야인 재활승마를 학습하여 임상에 나가 작업치료사로서 다양한 치료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재활승마에 대한 이론교육과 연구에 대한 자료 조사를 병행하여 학습하고자 한다.

해부학2(Anatomy2)

해부학은 인체를 공부하는 모든 학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으로 인간의 몸을 기능적으로 계통적으로 관찰하여 향후 작업치료사로서 인체를 이해하고 나아가 질환을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밑바탕이 되도록 하는데 그 학습 목적을 두고 있다.

임상운동학(Clinical kinesiology)

임상운동학과 기능해부학은 사람의 움직임과 함께 동작을 발생시키는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 모든 동시적인 복잡한 몸의 이해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체육지도자 등 건강관리 전문가 모두에게 중요하다. 이러한 학습은 간결하고 효과적인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하다.

병리학(Pathology)

병의 상태나 병원체의 조직구조, 기관의 형태 및 기능의 변화등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임상분야에 적용 가능하도록한다.

기능해부학(Functional Anatomy)

해부학과 연계, 일상생활 동작과의 관련성을 근골격계 및 신경계에 중점하여 이해한다.

생리학2(Physiology2)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의 원리와 조절작용을 파악하고 생체 항상성의 유지 기전을 연구하는 학문인 생리학은 특히 보건의료분야에 필수적인 학문

으로 인체 주요 장기, 근육, 신경계 등의 기능을 공부하여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일반생물학(Biology)

세포와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인체의 해부 생리학적인 기초지식을 이해한다

재활심리학(Rehabilitation psychology)

여러가지 이유로 신체장애를 갖게 된 인간의 정신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데 주목적이 있는 재활심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심리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신경해부학(Neuroanatomy)

신경해부학은 육안해부보다는 세포구축학적 현미경단위의 설명과 세포물리학 및 세포화학적 신경섬유의 연관관계의 인간 특유의 고차원적 정신 기능이 수행되는 매우 복잡한 부분으로, 섬세하고도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학문입니다. 일반적인 신경해부학을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신경생리학적 이론을 설명하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아동작업치료 및 실습(Occupational Therapy for Children&practice)

아동의 발달과 작업에 대해 이해하고 질환별 아동 작업치료 접근법에 대해 이해한다.

신경계작업치료 실습(Occupational Therapy for Nervous disorders&practice)

신경계 장애에 대해 이해하고 질환별 작업치료 접근법에 대해 학습한다.

일상생활동작 및 실습(Activities of Dainly Living&practice)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작업치료사의 역할과 업무를 파악한다. 클라이언트의 손상된 일상생활 수준과 잔존기능을 평가하며 다양한 기본적 일상생활과 수단적일상생활훈련법을 적용할 수 있다. 질환에 따른 적절한 일상생활훈련 방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습득하도록 한다.

임상작업치료평가(Field Work for Occupational Therapy)

작업치료의 용어와 영역, 과정 임상추론 등 각종 평가들의 이론과 방법을 알아보고 학습하도록 한다.

질환별작업치료학1(Disorders of Occupational Therapy1)

작업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질환들의 원인, 기전 및 증상들을 이해하고 각 질환별 측정 및 평가방법, 그리고 치료적 적용 방법 등을 학습한다.

근골격계작업치료 실습(Occupational Therapy for musculoskeletal disorders)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질환 뿐만 아니라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작업치료와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들에 대해 알아보고 각 질환별 치료적 중재 적용을 한다.

수예공작 및 실습(Crafts and Creative Media in Therapy)

치료와 재활에서 응용되는 수예와 공작을 통해 작업치료가 직업기반, 환자 중심 실무로 돌아오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작업치료사가 임상에서 다양한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해를 돕고자 한다.

감각통합치료 및 실습(Sensory Integration&practice)

감각통합이란 뇌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감각 자극들을 통합하고 해석하는 뇌의 능력을 의미한다. 감각통합 장애란 뇌가 이러한 감각 자극들을 적절히 통합하고 조직화하지 못하는 장애로서, 발달이나 정보처리, 행동 등에 다양한 정도의 문제를 일으킨다. 감각통합과 감각통합 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작업수행분석 및 실습(Occupational Performance analysis&practice)

작업치료사로서의 작업수행분석 능력을 함양하여 성공적인 작업수행분석 조건을 갖는 기술을 연마한다.

보건통계학(Statistics for Health care)

기초통계학에서부터 보건학 및 의학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생존분석, 반복측정 등의 통계기법 및 다변량 분석 방법을 학습한다.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와 한 부분을 차지하는 학문으로서 환자에게 정확한 보조기와 의지를 맞추어 주려면 그에 대한 충분한 기초적인 해부학, 기능학, 신경근 계통의 생리학 및 병리학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면 팀워크를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즉 의사의 올바른 처방, 보조기 및 의지 제작사의 훌륭한 솜씨, 작업치료사의 과학적인 트레이닝으로 한사람의 장애를 극복하는데 있어 재활의 중심이 된다.

작업치료세미나(Occupational Therapy seminar)

작업치료를 하는데 필요한 사고방식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작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획득하는 기회를 제공.

재활승마치료 및 실습1(Hippotherapy&practice1)

재활승마에 대한 개념 및 현황 그리고 이론적 근거 중심으로 학습할 것이다. 심리적인 부분보다는 신체적인 부분을 위주로 수업이 진행될 것이고 말과 인간의 협응을 통한 치료적으로 이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

노인작업치료학(Geriatric Occupational Therapy)

노인과 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노인전문작업치료사 중심으로 팀원들이 필요한 치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삼킴장애(Dysphagia)

삼킴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치료사로서 갖추어야 할 삼킴장애 치료법을 습득한다.

질환별작업치료학2(Disorders of Occupational Therapy2)

작업치료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각 질환에 대한 개요, 병인학 등에 대한 현재의 추이와 증례에 따른 사례들을 통해 질환에 대한 이해가 좀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내용을 다룬다.

정신사회작업치료학(Psychosocial Occupational Therapy)

정신사회작업치료의 역사, 학문적 배경, 개념, 용어, 이론의 틀, 추론방법 등을 이해하고 작업치료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주요문제와 관

련된 정신 병리들을 설명하며 정신장애의 진단체계와 임상적 평가법들을 설명할 수 있다.

의료관계법규(Medical Safety)

의료기사로써 업무 수행시 필요한 의료관계법규를 정확히 이해, 적용,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의료기사 국가고시에 대비하여 실력을 배양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운동치료학(Therapeutic Exercise)

작업치료의 여러 영역들 중 하나가 운동치료이며, 이에 필요한 운동조절과 운동학습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함께 운동치료 실시 전 사정과 평가, 평가 도구 소개 및 운동치료의 이론적 배경과 함께 운동치료 실습을 병행하고자 한다.

공중보건학(Public health)

공중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및 상호관계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 의식 수준을 향상하고, 보건전문인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며, 향후 국가고시에 대비한 기초 지식을 다진다.

인지작업치료학(Cognitive of Occupational Therapy)

치료목적이 있는 활동을 환자에게 인지활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며 장애를 예방하고 심리 및 정신적 장애의 평가에 도움을 주며 또한 치료와 훈련을 할 수 있는 기술이며 학문인 작업치료학에 대한 개괄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

신체재활을 위한 기초의 완성으로 골학, 관절학, 신경학 그리고 근육에 이르는 각기 기능적인 단위들을 학습하여 작업치료사로써 치료에 근간이 되는 운동학의 기초를 다지는데 학습의 목표가 있다. 신체재활이라는 표현은 광범위한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데, 최상의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적 노력을 의미한다. 운동학이 다른 많은 각도에서도 제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육과 관절 사이의 역학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작업치료학(Local Community of Occupational Therapy)

환자의 신체 및 정서적 욕구를 알고 가정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원 이용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최적의 건강수준을 유지하도록 돕는 방법을 습득케 한다.

작업치료도구(Therapeutic Modalities)

운동조절과 운동학습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함께 운동치료 실시 전 사정과 평가, 평가도구 소개 및 운동치료의 이론적 배경과 함께 운동치료 실습을 병행한다.

임상실습(Field work for Occupational therapy)

교육이론과 실재를 조화시켜 임상에서 작업치료를 할 치료사의 자질을 함양할 목적으로 다양한 치료이론 및 작업치료의 접근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재활승마치료 및 실습2(Hippotherapy&practice2)

재활승마치료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기능적인 회복을 위해서 물리치료, 작업치료, 재활심리치료와 언어치료적인 치료방법들을 바탕으로 말의 움직임이나 말과 인간의 교감등을 접목한 통합된 연계 프로그래이라 할 수 있다. 재활승마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교육과 작업치료와 접목, 재활승마의 실습을 통하여 재활승마에 대한 이론 뿐만 아니라 실기를 갖춘 작업치료사 양성에 학습 목적이 있다.

재활승마과

전공교양

사회복지법제(Social welfare and Law)

사회복지법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것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회복지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배양하기 위한 교과이다.

사회복지정책론(Social welfare and Policy)

회복지 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통해 사회복지 정책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추구하는 가치들을 이해하여 그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사회복지 정책의 제이론을 알아보고 그 이론들이 전개된 배경과 원리 그리고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및 방법을 탐색해 본다.

사회복지실천론(Theories of Social welfare practice)

상담가 및 임상가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사회복지실천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 익히고 임상이론 및 실천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안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상담 이론 및 구체적인 지침과 방법을 제공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면담과 상담 기술, 전문적 태도를 습득하게 한다.

사회복지조사론(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본 교과목에서는 조사설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사회복지현장실습(Social work practicum)

사회복지실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사회복지실습에서의 책임성, 현장실습의 슈퍼비전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 철학 및 윤리에 입각한 이론과 기술을

실천현장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전공선택

마필관리실무

마필의 관리에 대하여 학습하고 실습함.

마술학1(Riding technique1)

승마의 기본적인 운동원리를 이해하고 기본 기승술을 익힌다. 또한 승마 경기종목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세부적인 기술들을 익혀 상황에 따라 윤택하고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학(Hippology)

말의 역사, 품종, 혈통, 생리적 또는 심리적 특성, 신체구조와 성장, 사양 관리 및 훈련 등 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응급처치(Emergency care)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와 교통사고를 포함한 심혈관질환, 만성질환 등의 증가로 응급의료상황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신속한 응급처리로 살릴 수 있는 환자의 비율은 선진국보다 많이 낮은 실정이다.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응급처치를 이해시키고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인체해부생리학(Human anatomy&Physiology)

사람의 구조와 형태를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이며 필수과목이기 때문에 보건계열에 속하는 재활승마과에서는 꼭 공부해야하는 교과목이다. 해부학적인 기초 이론을 익히기 위해 교재에 삽입되어 있는 그림과 도표를 적극 활용할 것이며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는 해부학적 용어들을 좀 더 쉽게 풀어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재활승마개론(Introduction to Hippotherapy)

재활승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승마를 이용한 치료적 접근 방법에 대해 학습할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재활승마의 역사 및 정의, 국제적 동향, 재활승마의 팀 구성 및 대상 등을 학습할 것이며 신체

적 접근, 심리적 접근 등을 할 수 있도록 말과 인간의 기본이 되는 패턴에 대해 학습할 것이다.

재활승마세미나1(Hippotherapy seminar 1)

재활승마를 하는데 필요한 사고방식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재활승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획득하는 기회를 제공.

마술학2(Riding technique2)

승마의 기본원리를 익힌 학생들에게 좀더 체계적이고 발전된 기술들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말보건관리학(Equine health control&veterinary)

말 보건관리의 기본원리와 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말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승마 또는 재활승마장 운영 또는 관리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재활승마실습(Hippotherapy&practice)

재활승마의 이론적 정의 역사적 배경 및 동향과 치료적 접근법에 대해 이해한다.

재활심리학(Rehabilitation psychology)

여러가지 이유로 신체장애를 갖게 된 인간의 정신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데 주목적이 있는 재활심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심리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재활의학(Rehabilitation medicine)

장애인의 신체 및 정서적 욕구를 알고 가정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원 이용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최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하도록 돕는 방법을 습득케 한다.

말 관련 상식 및 법규

말 관련 상식과 법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고취시키며 재활승마치료 수행시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이해, 적용,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동물매개치료학(Animal-assisted therapy)

동물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동물매개치료학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특히 말을 매개로 하는 치료효과를 학습한다.

말의 해부 및 생리

말의 역사, 품종, 혈통, 생리적 또는 심리적 특성, 신체구조를 파악하고 학습한다.

물리치료 및 실습(Physical therapy&practice)

물리치료학에 대한 개념의 정리와 그에 따른 원리를 실습을 통해 학습할 것이다. 다음의 주요 항목들은 재활승마에 대한 치료적 접근법으로 응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재활 분야의 여타 과목들과도 유기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및 학습할 것이다. 주요 항목은 물리치료 기초, 물리치료 진단평가, 물리치료 중재 등이다.

승마기술1(Equestrianism1)

승마 기승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승마기술향상을 도모하고 말에 대한 특성 및 승마에 대한 기술적 접근을 용이하게 주도할 수 있다. 또한 승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여 향후 재활승마 분야의 전문가로서 실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작업치료학 및 실습(Occupational therapy&practice)

체적·정신적·사회적·직업적·경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손상으로부터 예방과 교정,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증진, 적응과 생산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선택된 과제나 활동에 참여시키는 치료방법으로서의 작업치료의 개괄적인 내용과 관련용어를 배우는 것이 교육목표입니다.

장애유형별 재활승마(Hippotherapy for disorder)

신경계 및 정형계 장애유형별 특성 및 분류를 할 것이고 근거에 입각한 재활승마 접근법에 대해 학습할 것이다. 주된 장애유형은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척수 손상, 다발성경화증, 파킨슨병,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 뇌성마비, 소아마비, 절단, 척수손상 등이다.

말조련 및 관리실무

말의 품종과 특성, 신체 구조와 해부학적 특성, 행동습성 및 생리현상, 사양 관리 및 마체손실,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마사 구조와 시설 관리 등을 교수하게 됩니다.

승마기술2(Equestrianism2)

승마의 기본원리를 익힌 학생들에게 좀더 체계적이고 발전된 기술들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언어치료학 및 실습(Speech and language therapy&practice)

언어장애가 나타나는 증상에 따른 분류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에 과 언어장애에 대한 개관, 진단 및 평가, 치료방법들을 알 수 있다

측정, 평가 및 실습(Diagnosis, assessment&practice)

환장의 문제점을 정확한 측정 및 평가를 통해 파악하기 위해 이론과 실기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재활승마세미나2(Hippotherapy seminar2)

재활승마를 하는데 필요한 발전된 사고방식을 취득하고 고차원적 재활승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획득한다.

정신건강론(Mental health)

인간의 기본적인 발달과 그와 관련된 정신건강의 문제 특히, 신경증 및 정신질환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여 내담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사회복지사로서 알아야 할 역할에 대한 부분을 실제 예를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복지론(Social Service for the handicapped)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다양한 차원의 장애인복지 실천방법 및 실천 기술을 습득하여 이후의 장애인복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실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습한다.

고급승마기술1(Advanced equestrianism1)

고급승마기술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발전된 기술들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의료관계법규(Medical Safety)

의료관계법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고취시키며 보건의료사업 수행 시 필요한 의료관계법규를 정확히 이해, 적용,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승마교수법(Equestrian teaching technique)

말을 태우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과 이론을 효율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과정을 이수한다.

임상실습1(Field work for Occupational therapy1)

재활승마를 이해하고 학습한 내용에 따라 임상실습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케이스를 연구한다.

사회복지개론(Introduction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의 다양한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가로서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에 대한 폭 넓은 지식, 기술, 방법들을 습득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확립하도록 한다.

인간행동과사회환경(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인간중심의 학문으로서 기본적인 사회과학은 물론 인문과학, 자연과학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광범위한 학문으로보다 체계적인 지식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교과목은 인간복지의 발달지원 및 인간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사회복지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복지론(Social welfare for the elderly)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노화과정에 있는 노인을 이해하여 향후 사회복지사로서 노인복지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고급승마기술2(Advanced equestrianism2)

고급승마기술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발전된 기술들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공중보건학(Public health)

공중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및 상호관계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 의식 수준을 향상하고, 보건전문인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며, 향후 국가고시에 대비한 기초 지식을 다진다.

재활승마세미나3(Hippotherapy seminar3)

재활승마를 하는데 필요한 발전된 사고방식을 취득하고 고차원적 재활승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획득한다.

아동복지론(Child welfare)

사회변화에 따른 아동의 권리사상과 가족중심 관점에서 접근하여 아동 및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 정책, 실천방법에 관한 내용을 익히고 실제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실현하는지에 대해 배운다. 2. Blended Learning를 통한 이론(on-line)과 실무중심(off-line)의 교육을 통해 아동복지실천 기술에 대한 실무를 익힌다.

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사회복지실천으로 지역주민들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생활고 등에 대한 변화수단으로, 지역주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에서 경제적, 사회적, 가치적, 문화적으로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데 그 활동목표를 둔다.

사회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통해 사회복지 행정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 행정의 체계와 개념을 이해하여 그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사회복지 행정의 제이론을 알아보고 그 이론들이 전개된 배경과 원리 그리고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및 방법을 탐색해 본다.

다. 사회복지 행정의 실천을 위한 각론에 관하여 살펴봄

임상실습2(Field work for Occupational therapy2)

재활승마를 이해하고 학습한 내용에 따라 임상실습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케이스를 연구한다.

특수재활복지

전공교양

인간행동과사회환경(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인간중심의 학문으로서 기본적인 사회과학은 물론 인문과학, 자연과학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광범위한 학문으로보다 체계적인 지식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교과목은 인간복지의 발달지원 및 인간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사회복지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신건강론(Mental health)

인간의 기본적인 발달과 그와 관련된 정신건강의 문제 특히, 신경증 및 정신질환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여 내담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사회복지사로서 알아야 할 역할에 대한 부분을 실제 예를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복지론(Social welfare with families)

사회변화와 함께 제도, 풍습, 법률, 오락, 산업 등 여러 분야도 이에 맞추어 급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가장 중요한 변화로 결혼지체, 출산율저하, 이혼율 증가, 다문화가정의 급증과 관련된 문제들은 가족을 둘러싼 변화들이다. 이러한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한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복지 차원의 대책들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가족과 가족복지, 가족정책, 가족복지의 실천방안 등 다각도로 접근하여 본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상담 이론 및 구체적인 지침과 방법을 제공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면담과 상담 기술, 전문적 태도를 습득하게 한다.

전공선택

사회복지개론(Introduction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의 다양한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가로서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에 대한 폭 넓은 지식, 기술, 방법들을 습득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확립하도록 한다.

장애인복지론(Social Service for the handicapped)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다양한 차원의 장애인복지 실천방법 및 실천 기술을 습득하여 이후의 장애인복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실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습한다.

사회복지실천론(Theories of Social welfare practice)

상담가 및 임상가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사회복지실천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 익히고 임상이론 및 실천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안다.

교육학개론(Introduction to Education)

교육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지니고 인간의 배움과정과 현상을 체계적이며 총체적으로 정리하여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의 올바른 이해를 하고자 한다.

아동발달(Child Development)

아동기까지의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교육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평생교육론

평생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세부적인 영역에 들어가기에 앞서 평생교육의 의미, 대두배경, 필요성 등의 이론적인 내용과 평생교육의 세부적인 영역을 다룸으로서 평생교육이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생교육방법론

현대사회의 변화와 요청에 따라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학교교육만으로 사회변화의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듯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평생교육현장에서 평교육을 구현하는 평생교육사들의 임무가 더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현장에서 교수자가 학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

요한 다양한 교육방법과 기법에 대하여 이해하고 파악하고자 한다.

재활승마(Equine Facilitated therapy)

활영역의 한 분야인 재활승마를 학습하여 임상에 나가 작업치료사로서 다양한 치료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재활승마에 대한 이론교육과 연구에 대한 자료 조사를 병행하여 학습하고자 한다.

사회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통해 사회복지 행정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 행정의 체계와 개념을 이해하여 그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사회복지 행정의 제이론을 알아보고 그 이론들이 전개된 배경과 원리 그리고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및 방법을 탐색해 본다.

다. 사회복지 행정의 실천을 위한 각론에 관하여 살펴봄

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사회복지실천으로 지역주민들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생활고 등에 대한 변화수단으로, 지역주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에서 경제적, 사회적, 가치적, 문화적으로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데 그 활동목표를 둔다.

보육학개론(Introduction for the child care&education)

육에 필요한 학문적, 심리적 접근을 함으로써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육하는데 필요한 실제적 지식과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아동복지론(Child welfare)

사회변화에 따른 아동의 권리사상과 가족중심 관점에서 접근하여 아동 및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 정책, 실천방법에 관한 내용을 익히고 실제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실현하는지에 대해 배운다. 2. Blended Learning를 통한 이론(on-line)과 실무중심(off-line)의 교육을 통해 아동복지실천 기술에 대한 실무를 익힌다.

실기교육방법론(Teaching Method of Practical Skill Education)

실기교사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실기교육에 대한 개괄적인 접근을 시작으

로 교수-학습 활동과 관련된 이론적 지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과이다.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현대사회의 변화와 요청에 따라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학교교육만으로 사회변화의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듯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평생교육현장에서 평생교육을 구현하는 평생교육사들의 임무가 더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현장에서 교수자가 학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방법과 기법에 대하여 이해하고 파악하고자 한다.

사회복지법제(Social welfare and Law)

사회복지법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것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회복지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배양하기 위한 교과이다.

사회복지정책론(Social welfare and Policy)

회복지 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통해 사회복지 정책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추구하는 가치들을 이해하여 그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사회복지 정책의 제이론을 알아보고 그 이론들이 전개된 배경과 원리 그리고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및 방법을 탐색해 본다.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Program Development&evaluation for children)

부모와 유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유아교육현장에 나갔을 때 영유아프로그램과 그것에 맞는 대상 영유아를 접목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보육과정(Curriculu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보육과정은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에게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킬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과목으로 보육과정의 이해, 구성, 내용,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서 예비교사들에게 현장에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보육실습(Practicum in child care)

보육실습은 예비교사들이 정규실습 이전까지의 교사양성교육을 통해 습득한 이론이나 지식을 실제로 경험해 보고 적용해 보는 기회이므로, 유아교육현장에 나갔을 때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수업을 하고 성공적인 실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치료교육실기(Practice of education and treatment)

치료교육 및 치료교육활동의 전반적인 이해와 국가수준 교육과정 조망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특수교육현장에서 어떤 근거와 비준을 가지고 수업이 계획되는지를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상담심리학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실재를 익히며 심리학의 세 가지 영역인 사고, 행동, 정서적영역을 연구하고 내담자를 이해하고 효과적인상담을 하기 위해 그들의 성장과정과 정서, 인지, 행동적인 특성을 다루기에 앞서 상담자 자신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통해 함께 성장 해 나가는 과정을 가져본다.

사회복지조사론(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본 교과목에서는 조사설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사회복지현장실습(Social work practicum)

사회복지실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사회복지실습에서의 책임성, 현장실습의 수퍼비전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 철학 및 윤리에 입각한 이론과 기술을 실천현장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놀이지도(play&early childhood education)

놀이는 유아들이 전인적 발달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생활을 풍부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유아에 관련된 놀이이론과 실제 유아들에게 제공되는 놀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언어지도(Language art for young children)

언어의 특징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긍정적인 언어발달을 위해 주어져야 될 언어환경과 가정과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져야 될

지도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아동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for children)

보육시설이나 기관의 아동에게 주어진 유해환경이나 안전에 대해 최소한의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를 함으로써 안락한 환경속에서 학습을 할수있도록 배려하며 아동 스스로 안전에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함이 교육목적이있다

평생교육경영론

급변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적응력을 갖추기 위하여 필수적인 성인교육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구, 실천하여 현장에서 유용한 교육을 하는데 목표를 둔다.

평생교육실습

교과서를 통해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평생교육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해 보고 적용해 보는 기회이므로, 평생교육현장에서의 성공적인 실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청소년보건복지과

전공교양

건강가정론(Family health)

가족의 개념과 가치를 이해하고 가족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가족이론과 정책, 실천적 접근방법 및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상담 및 치료(Family Counseling&therapy)

대사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출현으로 인한 가족기능의 변화로 인해 역기능적인 가족의 발생에 대해 다양한 가족상담 및 치료이론을 학습함으로써 가족상담사로서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전공선택

청소년육성제도론

우리나라 청소년육성제도의 현황과 실제에 대해 고찰하고 청소년 정책에 관하여 학습한다.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활동이다. 즉 청소년활동은 맹목적으로 행해지는 임의적인 활동이 아니라 청소년의 경험성장에 도움을 주는 교육적 경험으로서의 활동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청소년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이다.

청소년심리 및 상담

스마트폰중독, 인터넷중독, 시험불안, 왕따 등 학교생활에 지장이 되는 문제들을 청소년 심리상담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청소년문화

글로벌시대에 세계를 이끌고 갈 청소년의 심리발달과 정신건강에 대해 살펴 보면서 성문화, 의복문화, 게임문화, 모바일문화, 그리고 학교문화 등의 청

소년문화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문화의 지도와 방향에 대해 연구하는 과목이다.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을 제공하고, 청소년지도 방법에 대한 학습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게 하도록 한다.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문제의 발생에 개인적 특성과 가정환경은 물론 지역사회도 중요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청소년은 가정, 학교, 직장, 사회라는 귀속적 틀 속에서 주로 사회화되고 있는 연령층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라는 생활공동체 속에서 청소년문제와 보호를 살펴봐야 한다.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자원과 서비스를 찾아보고 청소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의 구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의 참여의 관점 이해와 청소년 참여형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의 이해, 청소년프로그램 평가방법을 이해하고 습득하도록 한다.

사회복지개론(Introduction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의 다양한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가로서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에 대한 폭 넓은 지식, 기술, 방법들을 습득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확립하도록 한다.

인간행동과사회환경(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인간중심의 학문으로서 기본적인 사회과학은 물론 인문과학, 자연과학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광범위한 학문으로보다 체계적인 지식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교과목은 인간복지의 발달지원 및 인간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사회복지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복지론(Social welfare with families)

사회변화와 함께 제도, 풍습, 법률, 오락, 산업 등 여러 분야도 이에 맞추어 급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가장

중요한 변화로 결혼지체, 출산율저하, 이혼율 증가, 다문화가정의 급증과 관련된 문제들은 가족을 둘러싼 변화들이다. 이러한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한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복지 차원의 대책들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가족과 가족복지, 가족정책, 가족복지의 실천방안 등 다각도로 접근하여 본다.

노인복지론(Social welfare for the elderly)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노화과정에 있는 노인을 이해하여 향후 사회복지사로서 노인복지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통해 사회복지 행정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 행정의 체계와 개념을 이해하여 그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사회복지 행정의 제이론을 알아보고 그 이론들이 전개된 배경과 원리 그리고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및 방법을 탐색해 본다.
다. 사회복지 행정의 실천을 위한 각론에 관하여 살펴봄

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사회복지실천으로 지역주민들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생활고 등에 대한 변화수단으로, 지역주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에서 경제적, 사회적, 가치적, 문화적으로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데 그 활동목표를 둔다.

사회복지법제(Social welfare and Law)

사회복지법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것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회복지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배양하기 위한 교과이다.

사회복지실천론(Theories of Social welfare practice)

상담가 및 임상가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사회복지실천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 익히고 임상이론 및 실천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안다.

사회복지정책론(Social welfare and Policy)

회복지 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통해 사회복지 정책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추구하는 가치들을 이해하여 그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사회복지 정책의 제이론을 알아보고 그 이론들이 전개된 배경과 원리 그리고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및 방법을 탐색해 본다.

사회복지조사론(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본 교과목에서는 조사설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상담 이론 및 구체적인 지침과 방법을 제공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면담과 상담 기술, 전문적 태도를 습득하게 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Social work practicum)

사회복지실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사회복지실습에서의 책임성, 현장실습의 슈퍼비전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 철학 및 윤리에 입각한 이론과 기술을 실천현장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정신건강론(Mental health)

인간의 기본적인 발달과 그와 관련된 정신건강의 문제 특히, 신경증 및 정신질환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여 내담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사회복지사로서 알아야 할 역할에 대한 부분을 실제 예를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복지론(Child welfare)

사회변화에 따른 아동의 권리사상과 가족중심 관점에서 접근하여 아동 및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 정책, 실천방법에 관한 내용을 익히고 실제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실현하는지에 대해 배운다. 2. Blended Learning를 통한 이론(on-line)과 실무중심(off-line)의 교육을 통해 아동복지실천 기술에 대한 실무를 익힌다.

보육학개론(Introduction for the child care&education)

육에 필요한 학문적, 심리적 접근을 함으로써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육하는데 필요한 실제적 지식과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아동발달(Child Development)

아동기까지의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교육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보육실습(Practicum in child care)

보육실습은 예비교사들이 정규실습 이전까지의 교사양성교육을 통해 습득한 이론이나 지식을 실제로 경험해 보고 적용해 보는 기회이므로, 유아교육현장에 나갔을 때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수업을 하고 성공적인 실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보육과정(Curriculu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보육과정은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에게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킬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과목으로 보육과정의 이해, 구성, 내용,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서 예비교사들에게 현장에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Program Development&evaluation for children)

부모와 유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유아교육현장에 나갔을 때 영유아프로그램과 그것에 맞는 대상 영유아를 접목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아동음악과동작(Music&Movement in early childhood)

음악교육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구체적인 지도법을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음악과 동작 활동을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아동문학(Children' s Literature)

유.아동 문학의 이론적 기초와 문학교육의 접근, 유아문학의 종류, 유아동문학의 실재를 통해 유아동문학교육의 대한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수립코저 함

아동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for children)

보육시설이나 기관의 아동에게 주어진 유해환경이나 안전에 대해 최소한의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를 함으로써 안락한 환경속에서 학습을 할수있도록 배려하며 아동 스스로 안전에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게 함이 교육목적이 있다.

보건복지행정과

전공교양

가족과젠더(Family and gender)

성과 가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이해하고 건강한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습득함으로써 행복한 가족복지의 실현을 창조해나가자

학교사회복지론(School of Social Welfare)

학교사회복지론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라는 실천영역에서 학교의 본질적인 목적인 교육에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총괄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사회복지사가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의 중재역할을 하면서 학교제도 안에서 학생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치료하고 예방하여 건전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원리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가족상담 및 치료(Family Counseling&therapy)

대사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출현으로 인한 가족기능의 변화로 인해 역기능적인 가족의 발생에 대해 다양한 가족상담 및 치료이론을 학습함으로써 가족상담사로서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장애인복지론(Social Service for the handicapped)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다양한 차원의 장애인복지 실천방법 및 실천 기술을 습득하여 이후의 장애인복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실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습한다.

전공선택

정신건강론(Mental health)

인간의 기본적인 발달과 그와 관련된 정신건강의 문제 특히, 신경증 및 정신질환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여 내담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사회복지사로서 알아야 할 역할에 대한 부분을 실제 예를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학(Health)

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및 상호관계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의식 수준을 향상하고, 건강장애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제 요인을 확인, 제거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토록 한다.

건강과운동(Health and exercise)

인체의 흐름에 맞춰 건강을 유지하고 더 좋게 향상 시킬수 있는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고 학습한다.

사회복지개론(Introduction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의 다양한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가로서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에 대한 폭 넓은 지식, 기술, 방법들을 습득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확립하도록 한다.

인간행동과사회환경(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인간중심의 학문으로서 기본적인 사회과학은 물론 인문과학, 자연과학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광범위한 학문으로보다 체계적인 지식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교과목은 인간복지의 발달지원 및 인간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사회복지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론(Community welfare)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사회복지실천으로 지역주민들은 물론 사회적 약자들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생활고 등에 대한 변화수단으로, 지역주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에서 경제적, 사회적, 가치적, 문화적으로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데 그 활동목표를 둔다.

다문화상담의이론과실제(Theory&practice for multicultural counselling)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적 인식과 상담및 치료는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과목은 다문화 상담이론의 개념, 적용과 특정 대상자들및 상담이론의 전망을 중심으로 다문화 상담이론과 실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사회복지행정론(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통해 사회복지 행정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 행정의 체계와 개념을 이해하여 그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사회복지 행정의 제이론을 알아보고 그 이론들이 전개된 배경과 원리 그리고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및 방법을 탐색해 본다.
다. 사회복지 행정의 실천을 위한 각론에 관하여 살펴봄

사회복지실천론(Theories of Social welfare practice)

상담가 및 임상가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사회복지실천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 익히고 임상이론 및 실천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안다.

가족과문화(Family and culture)

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가족이 보다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 발전키며 나갈 수 있도록 가족문화조성을 실천하는 현장전문가의 기초를 다진다

사회복지조사론(Research Methods for Social welfare)

본 교과목에서는 조사설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사회복지법제(Social welfare and Law)

사회복지법제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그것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회복지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배양하기 위한 교과이다.

가족복지론(Social welfare with families)

사회변화와 함께 제도, 풍습, 법률, 오락, 산업 등 여러 분야도 이에 맞추어 급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가장 중요한 변화로 결혼지체, 출산율저하, 이혼율 증가, 다문화가정의 급증과 관련된 문제들은 가족을 둘러싼 변화들이다. 이러한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한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복지 차원의 대책들

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가족과 가족복지, 가족정책, 가족복지의 실천방안 등 다각도로 접근하여 본다.

사회복지실천기술론(Skills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상담 이론 및 구체적인 지침과 방법을 제공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효율적인 면담과 상담 기술, 전문적 태도를 습득하게 한다.

노인복지론(Social welfare for the elderly)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노화과정에 있는 노인을 이해하여 향후 사회복지사로서 노인복지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현장실습(Social work practicum)
사회복지실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사회복지실습에서의 책임성, 현장실습의 수퍼비전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 철학 및 윤리에 입각한 이론과 기술을 실천현장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론(Social welfare and Policy)
회복지 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통해 사회복지 정책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추구하는 가치들을 이해하여 그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사회복지 정책의 제이론을 알아보고 그 이론들이 전개된 배경과 원리 그리고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및 방법을 탐색해 본다.

아동복지론(Child welfare)
사회변화에 따른 아동의 권리사상과 가족중심 관점에서 접근하여 아동 및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 정책, 실천방법에 관한 내용을 익히고 실제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실현하는지에 대해 배운다. 2. Blended Learning를 통한 이론(on-line)과 실무중심(off-line)의 교육을 통해 아동복지실천 기술에 대한 실무를 익힌다.

아동발달(Child Development)
아동기까지의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바

탕으로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교육과 사회복지 서비스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아동음악과동작(Music&Movement in early childhood)

음악교육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구체적인 지도법을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음악과 동작 활동을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보육과정

보육과정(Curriculu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보육과정은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에게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킬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과목으로 보육과정의 이해, 구성, 내용, 운영, 프로그램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서 예비교사들에게 현장에서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보육학개론(Introduction for the child care&education)

육에 필요한 학문적, 심리적 접근을 함으로써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육하는데 필요한 실제적 지식과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놀이지도(play&early childhood education)

놀이는 유아들이 전인적 발달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생활을 풍부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유아에 관련된 놀이이론과 실제 유아들에게 제공되는 놀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보육실습(Practicum in child care)

보육실습은 예비교사들이 정규실습 이전까지의 교사양성교육을 통해 습득한 이론이나 지식을 실제로 경험해 보고 적용해 보는 기회이므로, 유아교육현장에 나갔을 때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수업을 하고 성공적인 실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평가(Program Development&evaluation for children)

부모와 유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유아교육현장에 나갔을 때 영유아프로그램과 그것에 맞는 대상 영유아를 접목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아동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for children)

보육시설이나 기관의 아동에게 주어진 유해환경이나 안전에 대해 최소한의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를 함으로써 안락한 환경속에서 학습을 할수있도록 배려하며 아동 스스로 안전에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함이 교육목적이있다

2013학년도 학칙

성 덕 대 학 교

(최종개정 : 2012.09.01)

성덕대학교 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 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대학은 성덕대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 대학은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화남리 1135-5번지에 둔다.

제4조(설치 학과 및 입학 정원)①본 대학의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 1] 과 같다

② (세부전공) 각 학과별로 세부전공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의 수업 연한은 2년 또는 3년으로 한다.

② 작업치료과, 유아교육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과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6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3 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7조(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제8조(학기) 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한다.

1. 제 1 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로 한다.
2. 제 2 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3. <삭제>

제9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1학기와 2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삭제>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따

라 매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0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정공휴일
 2. 일요일
 3. 개교기념일
- ② 하계방학·동계방학 기간은 매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부득이한 경우 휴업일 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임시휴업) 총장은 비상재해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삭제>

제 4 장 신입학

제12조(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초로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문대학 입학전형기본계획에 의거한 시기까지로 한다. 다만, 편입학과 재입학은 매 학기초로부터 4주(28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제13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4조(입학지원절차) 입학 지원하는 절차는 모집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5조(입학전형) ① 신입학전형은 매학년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내에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6조(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 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입학허가 및 등록) 입학허가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자는 총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납과 차등납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입학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취소를 할 수 있다.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2. 총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3.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등에서 정하는 입학지원방법을 위반한 자
4. 기타 입학모집요강 등에서 총장이 정한 입학취소요건 해당자

제20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 6월이상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장 편입학·재입학 및 전과

제21조(편입학) ① 전문대학 졸업자 및 대학 1학년 전과정을 이수하고 취득학점이 40학점 이상인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제2학년(3년제는 2학년 및 3학년) 1학기에 편입학 할 수 있다. 단 전문대학·대학졸업자, 외국에서 수학한 자의 편입학은 제 1학년 2학기에서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허가한다.

(개정 2011.3.1.)

제22조(재입학) ① 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44조 제1항(처벌) 및 산업체위탁 교육생중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장의 추천과 교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재입학은 제적전 학과로 재입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폐과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취득한 후 다른 학과로 재입학을 할 수 있다.

④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 학과에 한한다.

제23조(전과) ① 본 대학 재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교내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산업체위탁교육생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등록생의 전과는 불허한다.

② 전과의 과별 입학정원은 전입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한다.

③ 전과의 과별 전출정원은 전출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한다.

④ 전과의 신청은 수업일수 1/2부터 종료일까지로 하고 신청 다음 학기부터 전과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⑤ 전과한 자는 전출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삭제>

제24조(등록) <삭제>

제 6 장 휴학, 퇴학 및 제적

제25조(휴학) ① 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은 1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휴학은 군휴학, 일반휴학으로 분류한다.

1. 군휴학 : 병역의무복무로 인한 휴학으로 입영명령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일반휴학: 질병, 해외연수,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은 병·의원 전문의(한의사 포함)진단서, 연수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병역의무복무로 인한 군휴학자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임시시험을 실시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⑤ 휴학생은 학기 시작 이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휴학할 수 있다.

제26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 등록기간에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은 학기개시 후 3주(21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③ 일반휴학 중 군휴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 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을 군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자퇴) ①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 퇴학(이하 “자퇴”라 한다)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제28조(제적) ①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처분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후 4주(28일)가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계출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3. 타교에 입학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5.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7 장 교과 및 수업

제29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 학점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 ~ 20%, 전문교과 80% ~ 90%로 한다. 다만, 학과의 특성에 따라 10%의 범위내에서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각 과별 교육과정(현장실습 포함)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학점이수) 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는 1학기 30(현장실습은 32시간)시간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5시간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제1학기과 2학기의 경우 15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제31조(학점인정) ①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학생은 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②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 등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 범위안에서 관련 전공교과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편입학 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교양교과 8학점, 전공교과 24학점 이내에서 소속된 모집단위의 학점으로 인정한다.

④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 적용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중인 자

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과정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경우. 학기당 3학점 이내 연간6학점까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제32조(자격증의 학점인정) ① 국가기술자격중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에 한하여 자격증 종별 1학점을 인정 할 수 있다.
- ②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실시하는 정보기술인증자격(ITQ)은 전공과 관계없이 종별 1학점으로 인정한다.
- ③ 국가기술자격중 취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증에 한하여 전공과 관계없이 1학점으로 인정하되, 학점인증 자격여부는 교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④ 자격증의 학점인정은 본교에 재학기간중 취득한 자격증만 해당되며, 재학기간중 최대 5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 ⑤ 자격증의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양식을 통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취득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 제33조(수업)①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방송·통신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세부운영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 ②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총장이 공고한다.
- ③ 수업시간표는 강의개시 2개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다.
- ④ 강좌는 09:00부터 22:00까지 개설·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34조(집중수업) ①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학기 등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정한다.

- 제35조(교수시간) ①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 ②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따로 정한다.

제36조(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출석의무) 학생은 수강신청한 전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38조(출석인정) ①학생의 질병검사, 예비군교육, 상고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사이버강좌) ① 본 대학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사이버강좌는 학과별로 해당학기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과목을 결정한다.

③ 사이버강좌는 본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강좌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며, 기타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강좌는 별도의 규정 및 협약에 의거하여 학점을 인정한다.

제40조(사이버강좌 수업운영) ①사이버강좌의 강의시간은 교과과정상에 개설되어 있는 정규과정의 강의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② 강의운영은 On-line강의와 Off-Line강의를 병행 할 수 있다.

제 8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41조(시험)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학기중 중간시험을 행할 수 있다.

②시험은 주·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각 교과목 총수업 시간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당해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제42조(추가시험)①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된 자에 대해서는 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을 부과 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제40조의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43조(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평소학습 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②교과목 성적이 D0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의 실험, 현장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이때, 취득학점은 인정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④수강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⑤성적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한다.

등 급	배 점	평 점
A+	100~95	4.5
A0	94~90	4.0
B+	89~85	3.5
B	84~80	3.0
C+	79~75	2.5
C	74~70	2.0
D+	69~65	1.5
D0	64~60	1.0
F	59점 이하	미취득
P		불계

제44조(성적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매학기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3. 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4.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

제45조(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졸업 및 수료)①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는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별지 I] 서식에 제○호의 졸업증서를 수여하며 졸업증서에는 교과과정상의 전공을 표기할 수 있다.

②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은 2년제 과정 80학점, 3년제 과정 12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졸업학점중 교양교과는 졸업 최소학점의 10%이상, 사회봉사, 현장실습 의무 대상 학과는 현장실습 3학점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제46조의2(졸업유예)① 학칙 제46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이 원할 경우 학기 단위로 2회까지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졸업유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1.3.1.)

제47조(후기졸업)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1. 졸업학점 미달자
2. 교양교과 학점 미달 및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자
3. 후기졸업자는 2개 학기내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8조(학위수여)본 대학에서 졸업이 인정된 자는 별지 서식 제○호에 의하여 별표 ○에 해당하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49조(수료)①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졸업사정에서 탈락한자에게 [별지2] 서식 제○호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수료 : 40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 80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 120학점 이상

②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 9 장 평생교육

제50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대학, 산업체등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상호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1조(공개강좌) ①본대학 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2조(전공심화과정) ①전문대학 졸업자의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위하여 1년이내의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입학자격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1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전공심화과정의 설치과정, 등록인원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① 고등교육법 제49조, 제5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에 의거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관련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공심화과정은 우리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설치한다.

③ 전공심화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동법률시행령, 동법률시행규칙 등에 의거하여 인정될 수 있다.

제53조의 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에 따른 전

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4조(시간제 등록제)제54조(시간제 등록제)①본 대학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간제를 등록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모집인원은 정규학생과 통합하여 모집하는 시간제 등록인원은 입학정원의 10%범 위 이내로 하고,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의 등 록인원은 입학정원의 10%범위내에서 정한다.

③학기별 모집단위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2.3.2.)

모집단위	모집인원(명)
인문사회계열	통합반 : 입학정원 10%
	별도반 : 입학정원 10%
총계	입학정원 20%

④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으로 하고, 연간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⑤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납입금 등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범위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학점은행제) ①본 대학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 지한 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80학점이상을 취 득한 자 중 본 대학에서 50학점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기타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비정규 특별과정 운영)①본 대학에는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비 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③비 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10 장 학생활동

제57조(학생자치기구) ① 본 대학의 정통과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 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 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 성덕대학교 총 학생회(이하“총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본 대학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총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 와 동시에 총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③총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8조(학생의 의무) ①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가 없다.

②(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치적 활동 및 집단적 행위, 시위, 성토, 농성, 수업거부, 불온 게시물의 무단부착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다.

제59조(학생회비)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학생단체의조직)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규정에 의거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1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학년초 학생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지도를 분담시키고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지도를 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학생 개인별 상담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2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 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의 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제63조(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4조(처벌) ①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직접 징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1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포함)는 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제 11 장 규율 및 상벌

제65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고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

제66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7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무계출 결석이 4주간을 초과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3.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가망이 없는 자
4.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 12 장 납 입 금

제68조(납입금)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시기에 소정액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실험 또는 실습비, 기성회비, 학생회비, 기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은 수업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한 납입금은 과오로 인한 것 이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69조(결석 또는 정학시의 납입금) 납입금은 결석·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70조(납입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1조(납입금의 반환) ① 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재학중인 자가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전항의 반환금은 학교수업료입학금에 관한규칙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제 13 장 학 금

제72조(장학금) ①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자퇴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4 장 교수회 및 제위원회

제73조(구성)① 본 대학에는 교수회를 두며,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서 구성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74조(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시는 그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및 연구
2. 학생지도
3. 장학 및 후생
4. 학과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5조(교무위원회) ①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본 대학의 기본적인 정책사항을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교무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6조(제위원회) ①본 대학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2011.08.30.개정)

②학생지도위원회, 장학지도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1.08.30.개정)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에 따라 장애인 특별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1.08.30.신설)

④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1.08.30.신설)

⑤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 2에 의하여 교원양성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11.08.30.신설)

제 15 장 학칙 제 · 개정절차

제77조(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학칙의 제 · 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 ·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8조(공고기간)학칙 제 · 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상으로 한다.

제79조(의견제출 및 처리)①본 대학의 교직원은 공고된 제 ·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당해 제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심의)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 · 개정안은 학칙에 의거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1조(공포절차 및 공포)제반 학칙의 공포를 교수회의 심의를 마친 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이 공포 후 즉시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한다.

제 16 장 직 제

제82조(교직원) ①본 대학에 두는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구분하며, 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 또는 계열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총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둔다.

③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겸임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자.

2. 초빙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3. 시간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자.

제83조(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은 교무를 통괄 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수 있다.(2012.3.2.)

③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84조(조직) ① 본 대학에는 기획관리실, 산학협동처, 학사지원처, 행정지원처 및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 기획관리실에는 실장을 보하여 실장은 총장을 보좌하여 교내 모든 부서를 통괄한다. 각 처에는 처장을 보하여 처장은 산하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각 처의 사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7 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85조(부속기관) ① 본 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을 둔다.

1. 학보사
2. 학술정보센터
3. 전산정보센터
4. 인터넷정보취업센터
5. 교육 방송국
6. 산업기술연구소
7. 식품개발연구소
8. 음악연구소
9. 최무선연구소
10. 평생교육원
11. 어학교육원
12. 사이버교육원
13. 원격평생교육원 (개정 2011.3.1.)

②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86조(부설기관) ① 본 대학에 학생지도연구소 등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18 장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제87조(성희롱 금지)①교직원 및 학생은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성덕학원 정관 및 인사규정, 본 대학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③이 학칙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표현행위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 진 것을 말한다.

제88조(성희롱 예방교육)①총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②제1항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9조(피해자 구제조치 등)①총장은 성희롱 피해가 접수된 경우에는 피해사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성희롱 피해자의 개인정보 누설방지 및 구제방안 마련

2.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제61조 제2항에 의한 징계는 적절한 조치 강구

②총장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여도 아니 된다.

제 19 장 산학협력단

제90조(설립근거) 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본대학에 산학협력단을 설립한다.

②산학협력단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한다.

제91조(명칭) 본 대학 산학협력단의 명칭은 “성덕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한다)이라 한다.

제92조(위치)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본 대학 안에 둔다.

제93조(산학협력단의 목적 및 업무) ①산학협력단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산학협력단의 정관을 통해 정한다.

제94조(산학협력이사)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둔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제95조(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제96조(행정사무) ①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행정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행정부서에는 직원, 연구원, 조교를 둘 수 있으며,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인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7조(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정한다.

제 20 장 정보화 책임관

제98조(근거) 행정기관의 정보화 책임관지정·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 본교에 정보화 책임관을 둔다.

제99조(인사) ①정보화 책임관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정보화 책임관은 전산정보센터장이 겸직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전산정보센터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100조(정보화 책임관의 업무) ①정보화사회에 있어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보화를 고등교육기관 전반의 혁신과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한다.

② 정보화 책임관은 교무위원회 소속으로 하여 교내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제101조(행정사무) ①정보화 책임관의 업무를 보좌하며, 교내 정보와 업무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센터를 정보화 책임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행정업무의 부서로 한다.

② 정보화와 관련하여 산학협동처, 학사지원처, 행정지원처와 관련된 업무는 각 부서와 정보화담당관의 긴밀한 협조하에 처리한다.

제21장 개인정보 보호

제102조(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며, 구성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3조(정의 및 인사) ①“개인정보”라함은 본교에 소속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②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정보화담당관이 중앙관리하며, 각부서별 보유 개인정보는 각 부서장이 담당한다.

제104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처리) ①본 대학에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②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한 개인정보는 다른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장 대학자체평가

제105조(자체평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대학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3 장 보 칙

제106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성덕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성덕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 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과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9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 ② 이 학칙 시행전 명칭이 변경된 학과 졸업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해당학과의 졸업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2) (과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정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전 명칭이 변경된 학과 졸업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해당학과의 졸업생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의 개편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가. 학과개편과 관련하여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의 개편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가. 학과개편과 관련하여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의 개편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가. 학과개편과 관련하여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의 개편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가. 학과개편과 관련하여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의 개편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가. 학과개편과 관련하여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9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학과의 개편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가. 학과개편과 관련하여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0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나. 사회복지계열 노인요양전공 졸업생은 2010학년도부터 노인요양재활과 졸업생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2) (학과의 개편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 가. 학과개편과 관련하여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1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2) (학과의 개편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 가. 학과개편과 관련하여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2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학과의 개편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 가. 학과개편과 관련하여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학생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3학년도까지 졸업하지 못한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별표 1]

성덕대학교 2010·2011 학년도 입학정원

대계열 분류	2010 학년도 모집단위	수업 연한	입학 정원	2011 학년도 모집단위	수업 연한	입학 정원	비고
자연 과학	바이오실용과학계열	2	17	바이오실용과학계열	2	20	세부전공 신설/증원
	화장품피부미용전공			푸드&테이블코디네이터전공			
	식품발효양조전공			웰빙식품조리전공			
				와인양조전공			
				뷰티스킨케어전공			
	안경광학과	3	40	안경광학과	3	40	
	작업치료과	3	30	작업치료과	3	30	
	응급구조과	3	22	응급구조과	3	22	
재활승마과	3	15	재활승마과	3	15		
소계			124			127	
인문 사회	사회복지계열	2	270	사회복지계열	2	287	세부전공 신설/증원
	다문화가족복지전공			다문화가족복지전공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전공			
	복지경영전공			복지경영전공			
				의료사회복지전공			
	호텔관광외식과	2	20				폐과
	보건복지행정과	2	40	보건복지행정과	2	50	증원
	유아교육과	3	60	유아교육과	3	60	
	유아특수재활복지과	2	20	유아특수재활복지과	2	30	증원
	사회복지상담과	2	40	사회복지상담과	2	50	증원
노인요양재활과	2	40	노인요양재활복지과	2	20	명칭변경 /감원	
병원의료코디네이터과	2	30	병원의료코디네이터과	2	30		
소계			520			527	
예· 체능	음악계열	2	30	음악계열	2	20	감원
	클래식전공			클래식전공			
	실용음악전공			실용음악전공			
	마칭전공			마칭전공			
소계			30			20	
합계			674			674	

성덕대학교 2011·2012 학년도 입학정원

대계열 분류	2011 학년도 모집단위	수업 연한	입학 정원	2012 학년도 모집단위	수업 연한	입학 정원	비고
자연 과학	바이오실용과학계열	2	20	바이오실용과학계열	2	20	
	푸드&테이블코디네이터전공			푸드&테이블코디네이터전공			
	웰빙식품조리전공			웰빙식품조리전공			
	와인양조전공			와인양조전공			
	뷰티스킨케어전공			뷰티스킨케어전공			
	안경광학과	3	40	안경광학과	3	40	
	작업치료과	3	30	작업치료과	3	30	
	응급구조과	3	22	응급구조과	3	22	
	재활승마과	3	15	재활승마과	3	15	
소계			127			127	
인문 사회	사회복지계열	2	287	사회복지계열	2	257	감원
	다문화가족복지전공			다문화가족복지전공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전공			
	복지경영전공			복지경영전공			
	의료사회복지전공			의료사회복지전공			
				아동복지과	2	30	신설
	보건복지행정과	2	50	보건복지행정과	2	50	
	유아교육과	3	60	유아교육과	3	60	
	유아특수재활복지과	2	30	유아특수재활복지과	2	30	
	사회복지상담과	2	50	사회복지상담과	2	50	
	노인요양재활복지과	2	20	노인요양재활복지과	2	20	
	병원의료코디네이터과	2	30	병원의료코디네이터과	2	30	
소계			527			527	
예· 체능	음악계열	2	20	음악계열	2	20	
	클래식전공			클래식전공			
	실용음악전공			실용음악전공			
	마칭전공			마칭전공			
소계			20			20	
합계			674			674	

성덕대학교 2012·2013 학년도 입학정원

대계열 분류	2012 학년도 모집단위	수업 연한	입학 정원	2013 학년도 모집단위	수업 연한	입학 정원	비고
자연 과학	바이오실용과학계열	2	20				폐과
	푸드&테이블코디네이터전공						
	웰빙식품조리전공						
	와인양조전공						
	뷰티스킨케어전공						
	안경광학과	3	40	안경광학과	3	40	
	작업치료과	3	30	작업치료과	3	30	
	응급구조과	3	22	응급구조과	3	22	
	재활승마과	3	15	재활승마과	3	25	증원10
소계			127			117	
인문 사회	사회복지계열	2	257	사회복지계열	2	148	감원 전공명칭 변경
	다문화가족복지전공			보육복지전공			
	사회복지전공			평생교육복지전공			
	복지경영전공			웰빙문화복지전공			
	의료사회복지전공						
	아동복지과	2	30	아동복지과	2	50	증원
	보건복지행정과	2	50	보건복지행정과	2	60	증원
	유아교육과	3	60	유아교육과	3	60	
	유아특수재활복지과	2	30	특수재활복지과	2	40	증원/ 명칭변경
	사회복지상담과	2	50	사회복지상담과	2	60	증원
	노인요양재활복지과	2	20	노인재활복지상담과	2	40	증원/ 명칭변경
	병원의료코디네이터과	2	30	청소년보건복지과	2	50	증원/ 명칭변경
소계			527			508	
예· 체능	음악계열	2	20				폐과
	클래식전공						
	실용음악전공						
	마칭전공						
소계			20			0	
합계			674	정원감축(5%)-34명감축		625	3년제증원 (15명감축)

성덕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성 덕 대 학 교

(최종개정 : 2012.09.01.)

학칙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학칙 제106조에 따라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부전공) ①세부전공은 매학년도 계열 및 학과별 정원조정시 결정한다.
②세부전공은 학과의 교과과정 운영상 졸업학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별도의 교과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한다.
③세부전공은 1학년과정은 공통으로 운영하며 2학년 과정에서 세부전공을 선택한다. 2학년의 세부전공은 계열별 공통과목 및 별도교과목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세부전공의 선택은 수강자가 수강신청시 별도교과목을 선택하여 선정된다.

- 제3조(계절수업) ① 필수과목 미 이수자, 또는 기타과목 이수 희망자를 위하여 하계 방학기간 및 동계 방학기간 중에 계절수업을 실시한다.
② 수업기간은 3주 이상으로하고 학점 당 수업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계절수업은 한 계절 당 최대 8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④ 수업료는 학점 단위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이를 수강신청시 확정 공고한다. 수강과목을 취소하는 경우는 등록금반환규정에 의거하여 반환한다.
⑤ 출석기준 및 성적산출은 학기별 수업과 동일한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⑥ 계절수업 취득학점으로 인한 조기졸업은 불가능하다.

- 제4조(전과시 학점인정) ① 교내전과시 전출과와 전입과에서 동일한 교과목을 운영하였을 경우는 교양 및 전공학점을 불문하고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② 동일한 교과목이라도 그 교과목내용이 다를시에는 학점인정을 하지 아니하며, 교과목의 내용은 동일하나 교과명이 유사할시에는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학점을 인정한다.

제5조 (학점인정) 편입생 학점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양과목 중 본 대학 교양과목과 동일한 과목에 한하여 그 학점을 인정한다.
2.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과목 학점은 편입학과의 전공과목과 동일한 과목의 소정학점만 인정한다.
3.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과목에서 전기1, 2항의 인정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은 선택과목으로 인정하되 본 대학의 교과과정의 선택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할 수 있다.

4.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단위가 본 대학과 상이할 때는 본 대학 학점 단위로 환산한다.

5. 학점 인정이 결정되면 개인별로 통지하여 수강신청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6조(수업운영방법)①수업의 운영방법은 학칙 제29조, 제30조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② 학칙 제33조의 수업은 출석수업과 원격수업으로 운영되며, 출석수업과 원격수업은 병행되어 운영할 수 있다.

③ 원격수업은 학칙 제39조, 제40조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④ 원격수업의 운영시간은 매15주 수업으로 진행하며, 해당과목 1주의 수업은 1개 또는 분할된 강의콘텐츠로 구성되며, 이를 매학기 15개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원격수업의 수강자는 강의콘텐츠를 듣는 것으로 출석이 인정된다.

제7조 (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결석하게 될 경우 사고발생전이나 발생 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동등한 사고의 경우 3일
2. 3일 이상 입원치료기간 또는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의 경우 2주 이내
3. 징병검사의 경우 통지서에 명기된 일수
4. 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 야외실습 참가의 경우 해당기간
5.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의 경우 해당시간
6. 학교의 요청에 따른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의 경우 해당기간

제8조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초 지정된 기간 내에 허용한다. 다만, 해당학기 수강신청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강신청을 필하지 못 한자는 추가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등록 기간내에 등록을 필하지 못하는 경우 학과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등의 수강신청은 입학 허가를 받은날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수강신청은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수강신청이나 부

주의로 인한 신청 상의 과오는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제9조 (이수과목대체) 교과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유사과목으로 대치하여 이수코자 하는 전공과목 및 학점이 종전의 것과 불일치할때에는 총장의 재가를 얻어 종전의 과목 및 학점으로 대치, 인정하여 이수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 (수강신청 정정 및 포기) ① 수강신청을 정정 또는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강후 4주 이내에 공고된 기간내에 할 수 있으며 수강을 포기한 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승인없이 포기한 교과목은 F가 되며 승인을 얻어 포기한 교과목은 성적평점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수강불허) ① 수강신청을 아니한 교과목 또는 중복 신청한 교과목은 수강을 불허하여 그 성적을 취득할 수 없다.

② 교과목의 배정 학점을 변경하여 수강신청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변칙수강으로 판단되는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재수강) 재수강이라 함은 F학점으로 인하여 해당학기에 재수강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1. 재수강시 교과과정 학점변경으로 학점이 상이할 경우는 종전 교과과정 학점으로 정한다.

2. 재수강은 매학기당 최대 수강학점의 1/2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3. 재수강 과목은 재수강 과목 해당학기를 맞추어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양과목은 예외로 한다.

4. 재수강 신청은 과거에 취득하지 못한 필수 과목부터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재수강을 신청하는 미취득 과목이 폐강된 경우에는 대치 과목으로 소속 학과장은 유사과목을 지정,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수강신청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취득한 과목 중 F학점으로 인하여 재수강코자 하는 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재시험) ① 당해 학기 개설과목 중 재시험을 원하는 수강자 또는 시험 미응

시자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재시험은 1회(학기말)에 한하여 실시하며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점은 10 학점 이내로 한다.

③ 재시험 기간은 본 시험 성적일람표를 제출 후 1주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재시험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4조(시험제출) ① 중간고사(수시시험)와 기말고사 출제는 주관식 또는 객관식을 병행 또는 단독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 교과목을 2인 이상의 교수가 강의했을 경우 공동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성적산출) ① 재수강으로 인하여 한 과목의 학점을 이수하기 위하여 2과목 이상으로 분리 수강 신청하였을 경우, 성적 산출은 분리 수강신청한 성적을 합하여 과목 수로 나눈 값을 성적으로 인정한다.

② 성적산출에 대한 성적 배점비율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과목별 담당교수의 판단에 의해 중간고사는 생략할 수 있으며, 배점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

* 출석성적 20%

* 발표·토론·과제·기타 20%

* 중간고사(수시고사)성적 20%

* 기말시험(필수고사)성적 40%

③ 성적평가의 방법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상대평가의 성적등급별 분포비율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등 급	A등급 이상	B등급이상 (A+B)	C등급이하 (C+D+F)
구성비	30%이하	70%이하	30%이상

④ 위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교직원관련 교과목
- 2) 순수실험(실습.실기) 및 현장실습 과목
- 3)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

제16조 (평점산출) ① 출석성적, 평소학습성적, 중간고사(수시시험)성적, 기말시험성적을 합하여 9단계 평가법으로 평점 산출한다.

② 성적평점 산출시 동일 평점의 우선순위는

1. 실점수
2. 교양과목

3. 전공필수 과목 순으로 산출한다

제17조 (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1.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학기 전 교과목의 성적
2. 시험중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유기정학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과목의 성적 및 동일한 시험기간내의 그 후의 시험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3. 출석미달 과목의 성적
4. 미등록 응시자의 성적
5.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의 성적
6. 기타 부정으로 얻은 과목의 성적

제18조 (출결 및 성적수시열람) 학생은 수시로 담당교수에게 자기의 출결 사항과 성적을 문의할 수 있다.

제19조 (성적이의 신청 및 성적제출) 성적이의 신청 및 성적 정정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해당학기 성적 이의 신청은 성적발표 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2.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의 신청을 접수한 즉시 출결, 과제물, 시험답안지 및 기타 성적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재검토한 결과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성적을 정정하여야 한다.
3. 담당교수는 시험 최종일 이후 7일 이내에 완전한 성적을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장은 즉시 학사지원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성적산출근거관리) 담당교수는 성적을 산출한 근거(시험답안지, 과제물, 출석부등)를 3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단, 시간강사는 학과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제21조 (평점평균) 학업 성적의 평점 평균의 산출은 다음과 같은 산출 평균치로 하여 셋째자리에게 반올림 처리한다

$$[\text{교과목별 평점} \times \text{학점의 총합}] / \text{수강신청 총학점}$$

제22조 (성적정정) 각 학과에서 학사지원처로 제출한 성적은 절대 정정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을 요할 시에는 답안지와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유급) ① 유급은 한 학년 전 과목의 평점이 평균이 1.0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급자는 학년 초 등록기일내에 유급된 학년의 소정의 절차를 밟아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학사경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학기 등록전에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학사경고 통고를 하여야 한다.

1. 매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미만인자
2. 매학기 평점 평균이 1.0이하인 자

제25조 (복학) ①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개강전 소정 기간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복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2. 휴학 인정서(본교 소정 양식)

② 복학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등록을 필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한다.

제26조 (재입학) ① 퇴학하였거나 제적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학칙 제67조(징계)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27조 (편입학) 학칙 제21조에 의거 편입학을 원하는 자는 전적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32학점 이상인 자로서 다음 서류를 학사지원처에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전적교 재적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반명함판 사진2매

제28조 (성적평가 표시 통일화) 전적 대학의 성적평가 표시가 본 대학과 상이할 때는 본 대학 성적평가 기준에 맞추어 처리한다.

제29조 (학점의 취소) 인정한 학점이라도 그것이 착오나 부정행위에 의하여 취득하였음이 확인될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 (입학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입학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수속을 필하지 아니한 자
3. 이중 학적을 가진 자.
4. 허위 서류 첨부자

② 신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이 허락되었다 하더라도 후일 학적 및 기재사항에 허위가 나타날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이때 기납부한 일체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31조 (신입생 학번부여) 학생 개개인에게 학번을 부여하며, 학번은 입학연도2단, 학과번호 2단, 순번 3단으로 구성한다.

제32조 (복학생 학번사용) 학번은 졸업 시까지 변경하지 못한다. 복학이나 재입학의 경우에는 기부여된 학번을 그대로 사용한다.

제33조 (편입생의 학번부여) 편입학생에게 학번을 부여함에 있어 입학 연도 숫자는 편입학 학년 재학생의 입학연도로 하며 기존 학번의 다음부터 부여한다.

제34조 (기재사항 정정) 학적부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학적부 정정원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사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주민등록초(등)본 1통

제35조 (입학금)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 (복학생의 납입금) 복학이 허가된 자는 그 학기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필한 후 중간시험 이전에 휴학한 학생은 납입금없이 복학 할 수 있다.

제37조 (휴학자의 납입금)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전액 납부

하여야 한다.

1. 수업일시 1/4 이내 휴학자 : 등록금 유효, 성적무효
2. 수업일수 1/4 이후 휴학자 : 등록금 무효, 성적무효

제38조 (과목 담당 교수의 시간배정) 전임교수의 시간배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 (보강 및 대강) 결강 및 휴강으로 인한 수업결손은 반드시 보강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타교수로 하여금 대강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 (결강) 공무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결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강계획서를 학사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교과이수기준) ① 복학 또는 재입학자는 해당 학년 잔여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복학 또는 재입학자의 이미 취득한 교과목 학점은 그대로 인정한다.
- ③ 졸업학점 미달로 잔여과정을 재수강(5차 등록이상) 하는 자는 부족학점을 해당 과목 또는 대체과목으로 이를 이수하고 취득하여야 한다.
- ④ 필수 과목은 반드시 학기 구분하여 해당 교과목을 해당학기에 이수하여야 한다.

제42조 (교과과정 설강기준) ①교과과정 설강 기준은 교수회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43조 (시간제 등록제) ① 학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시간제 등록생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② 시간제 등록제는 매학기 개시전 시간제운영 모집요강과 개설과목을 공지하여 지정된 원서접수 기간 및 등록절차에 의하여 운영된다.
- ③ 시간제등록생은 본교입학지원서와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는 입학불허한다.
- ④ 시간제 과목의 운영방법 및 수업일수와 성적부여등의 방법은 본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과목과 동일한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제44조(졸업유예 신청자격 및 조건) ① 졸업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학칙 제46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졸업예정자

2. 학칙 제5조의 수업연한을 충족하는 졸업예정자

② 졸업유예자의 등록금은 학생등록금납부규정 제68조를 적용한다.

③ 졸업유예자는 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졸업유예기간에는 휴학 할 수 없다.

제45조(졸업유예 신청절차 및 시기) ① 졸업유예는 졸업유예신청서를 학과(계열)장이 취합 후 학사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졸업유예의 신청시기는 마지막 학기의 성적사정이 확정된 후에 신청한다.

제46조(졸업유예 직권취소) ① 졸업유예를 위한 등록금납부기한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총장은 졸업유예를 취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졸업유예가 취소된 경우, 해당 학생은 당초 졸업예정시기에 학위를 수여 받는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부>

[별표 1]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등급 구분(제4조제4항 관련)

1. 응시자격

가. 공통

- 1) 만 18세 이상인 사람
- 2)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1급 자격시험의 경우: 2급 자격 취득 후 해당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다. 2급 자격시험의 경우: 3급 자격 취득 후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 자격별 시험과목

자격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등급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필기	마술학(馬術學) 마학(馬學) 말 보건관리 말 관련 상식 및 법규	장제학(裝蹄學)의 장제 이론 말의 해부 및 생리 말 관련 상식 및 법규	재활승마이론 마술학 마학 말 관련 상식 및 법규
실기	마술 마필관리 실무 말 조련 및 관리실무	장제 실무	마술 재활승마 실무

비고: 위 표에서 "말 관련 법규"란 「말산업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3.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044-201-2324, 2325

- 제4조(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1급 자격시험, 2급 자격시험 및 3급 자격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자격시험은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 실기시험은 제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③ 제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자격시험의 제1차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④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및 등급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 ⑤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자격증의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합격한 사람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자격증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말산업 육성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044-201-2324, 2325

제11조(말산업 관련 자격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자격부여 등) ①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등급의 구분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말조련사, 장제사나 재활승마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3.3.23>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3. 마약이나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자격 취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별표 1] <개정 2012.6.29>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21조 관련)

1.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가정보육시설

-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2)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영아 전담 보육시설: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

-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2)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 2)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 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1) 가목에 따른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 1급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비고

1.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 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 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2. "보육업무 경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3.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란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별표 4] <개정 2012.8.17>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1.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보육 기초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4과목(12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 아동수·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3과목(9학점) 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2학점) 필수
전체	12과목(35학점) 이상	

※ 비고

- 1)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관계 없이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 2)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2.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기관: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 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은 3명 이내로 한다.

나. 실습기간: 실습기간은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

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다. 실습 인정시간: 실습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실습의 평가: 실습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2-2023-8922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8>

[전문개정 2009.6.30]

[제목개정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3.9.5] [법률 제11858호, 2013.6.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2-2023-8922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0.1.18, 2011.8.4>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8.4>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제22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이하 "보육자격증 교부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6.7>

③ 삭제 <2011.8.4>

④ 삭제 <2011.8.4>

⑤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는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1.8.4>

⑥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補修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3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3.1.27] [보건복지부령 제147호, 2012.8.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2-2023-8214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3.7, 2008.3.3, 2010.3.19>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①영 제2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2.12.31, 2008.11.5>

1. 삭제 <2002.12.31>
 2. 영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외한다)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 ②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11.5>
1. 사회복지사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1부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 ③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 ④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11.5>

제4조의2(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① 영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② 수수료는 그것을 낸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11.30]

제5조(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육을 명하려면 미리 교육 목적·내용·시간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09.11.30, 2010.3.19>

1.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5항에 따른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사회복지윤리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8.3>
- ⑤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0.3.19>
- ⑥ 협회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수교육 대상자명단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5.]

[별표 1] <개정 2010.3.19>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 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복지보장론, 사회복지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가. 실습기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다.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개정 2008.10.28>

사회복지사국가시험과목(제3조제3항 관련)

1. 사회복지기초(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및 사회복지조사론을 말한다)
2.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및 지역사회복지론을 말한다)
3.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행정론 및 사회복지법제론을 말한다)

[별표 1의2] <개정 2010.3.15>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대통령령제15839호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등 급	자 격 기 준
<p>사회복지사 1 급</p>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때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p>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p> <p>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p> <p>라.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p>
<p>사회복지사 2 급</p>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p> <p>나.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p> <p>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p> <p>라.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p>
<p>사회복지사 3 급</p>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p>

	<p>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p> <p>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p> <p>다.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p> <p>라.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p>
--	--

비 고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별표 1] <개정 2010.3.15>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

등 급	자 격 기 준
사회복지사 1 급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사회복지사 2 급	<p>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p> <p>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p> <p>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p> <p>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p> <p>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p> <p>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p> <p>사.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p>
사회복지사 3 급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다.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라.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비 고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3.1.27] [대통령령 제24020호, 2012.8.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2-2023-8214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10.30>

②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8.3>

제3조(국가시험의 시행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관을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 <신설 2002.12.26, 2007.10.31, 2008.2.29, 2010.3.15>

1. 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응시원서의 제출기간·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09.11.30, 2010.3.15, 2012.5.1>

④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⑤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4조(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②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 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2007.12.31>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2008.2.29, 2010.3.15>

1. 성명 및 주소
2. 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제목개정 2002.12.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3.1.27] [법률 제11239호, 2012.1.2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2-2023-8214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전문개정 2011.8.4]

제12조(국가시험)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④ 시험 과목, 응시자격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教育)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6>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14조(사회복지 전담공무원)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제15조에 따른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하 "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복지전담공무원은 그 관할지역에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 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별표 2] <개정 2013.3.23>

교사자격기준 (제22조제2항관련)

자 격 급 별	자 격 기 준
정교사 (1급)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정교사 (2급)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졸업 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준교사	1.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비 고 1. 원장·원감,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장·교감, 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2. 이 표중 전문대학에는 종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2-2100-6497

제22조(교원의 자격) ①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④ 삭제 <2010.3.24>

⑤ 삭제 <2010.3.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13.6.4] [법률 제11859호, 2013.6.4,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2-2023-7371

제7장 응급구조사 <개정 2011.8.4>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①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3.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2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2007.12.14, 2011.8.4>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나.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8조(의료과실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7조제1항

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제목개정 2011.8.4]

제3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① 부정한 방법으로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응급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제39조(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40조(비밀 준수 의무)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8.4]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41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내용·방법에 따라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응급구조사는 제4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른 업무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4]

제42조(업무의 제한)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41조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와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의 불능(不能)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및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대상과 제3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14]

제43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1조의2에 따른 응급구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5.14]

부칙 <제11859호, 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62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급차등을 등록한 자는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3개월 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12] <개정 2010.3.19>

응급구조사시험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제26조관련)

1.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구 분	과 목
1급 응급구조사	기초의학, 전문응급처치학총론, 전문응급처치학각론, 응급의료관련법령, 응급환자관리
2급 응급구조사	기본응급처치학총론, 기본응급처치학각론, 응급의료관련법령, 응급의료장비, 기본응급환자관리

2. 실기시험의 시험방법

실기시험은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별표 11]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교육과목 및 시간(제25조제1항관련)

과 목			시간표		
			계 (시간)	강의 및 실습 (시간)	실무수습 (시간)
응급의학 과 목	기 본 응급처치학 총 론	1. 응급의료의 개요	5	5	
		2. 환자구조 및 운반	20	20	
		3. 기본응급처치술	15	15	
		4. 대량재해 응급의료	10	10	
		소 계	50	50	
	기 본 응급처치학 각 론	1. 심폐정지	20	20	
		2. 순환부진	10	10	
		3. 의식장애	15	15	
		4. 출혈	10	10	
		5. 일반외상	15	15	
		6. 두부·경추손상	15	15	
		7. 기도·소화관이물	5	5	
		8. 대사상·체온이상	5	5	
		9. 감염증·면역부진	5	5	
		10. 급성복통	5	5	
소 계	11. 화학손상	5	5		
	12. 산부인과질환	10	10		
	13. 신생아질환	10	10		
	14. 정신장애	5	5		
	15. 창상	10	10		
소 계		145	145		
기 본 응급환자 관리학	1. 환자평가	5	5		
	2. 환자관리	10	10		
	소 계	15	15		
응 급 의료장비 등 운 영	1. 휴대용 의료장비 사용	10	10		
	2. 구급차내 의료장비 사용	10	10		
	3. 무선통신방법	3	3		
	4. 기록의 작성 보관	2	2		
	소 계	25	25		
관련법령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	5		
	2. 의 료 법	3	3		
	소 계	8	8		
계			243	243	
실무수습	1. 구급차 동승실습	50		50	
	2. 응급의료기관 실습	50		50	

	소 계	100		100
	총 계	343	243	1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2.28] [보건복지부령 제183호, 2013.2.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2-2023-7371

제24조(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25조(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①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의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별표 11과 같다.

②응급구조사양성기관의 장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1의 교육과목 중 구급차 동승실습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1.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2.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소속되고, 구급차등에 탑승하여 1년 이상 응급의료활동에 참여하거나 보조한 자
3. 300시간 이상 인명의 구조·구급활동에 참여한 경력을 가진 자원봉사자로서 시·도지사로 부터 인정을 받은 자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①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별표 12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시험의 합격자결정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중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27조(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 관리기관(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이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①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29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 가. 법 제36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나. 법 제3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자격증사본 또는 면허증사본 1부
 - 다.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자격증 사본 1부 및 경력증명서 1부
2. 법 제3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2매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시험응시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등록대장에 합격자를 등록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11.12] [대통령령 제24175호, 2012.11.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2-2023-7371

- 제25조(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①법 제3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은 강의·실습 및 실무수습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에 따른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당해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8.6.11>
- ③양성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자의 학력·경력 및 자격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목 및 시간의 일부를 감면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5.23] [법률 제11102호, 2011.11.2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2-2023-7313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의무기록사"란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11.22]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제4조(면허) ①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3.5.15, 2008.2.29, 2010.1.18, 2011.11.22>

1.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2. 삭제 <1999.2.8>
3. 삭제 <1999.2.8>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② 삭제 <1999.2.8>

[제목개정 2011.11.22]

제6조(국가시험) ①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2]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2회에 한정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1.22]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전문개정 2011.11.22]

[시행일 : 2013.12.5] 제7조

제8조(면허의 등록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할 때에는 그 종류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2]

부칙 <제11102호, 2011.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조의2, 제12조제1항, 제23조제1호의2,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0851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1조제3호의2·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 제22조제3항, 제28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칙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851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기사등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별표 1] <개정 2012.5.23.>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실기시험의 범위(제8조 관련)

의료기사 등의 종류	필기시험과목	실기시험의 범위
4. 작업치료사	가. 공중보건학 개론 나. 해부생리학 개요 다. 작업치료 개론(측정 및 평가, 질환별 작업치료 사업 분석) 라. 일상생활동작(생활동작 평가 및 생활동작 분석) 마. 수예 및 공작 바. 의료 관계 법규	치료적 운동 및 보조기, 의수족에 관한 것
8. 안경사	가. 안광학(안경광학·기하광학·물리광학·안광학 기기에 관한 것) 나. 안경학(안경 조제 및 가공, 안경학 개론, 안경재료에 관한 것) 다. 안과학(시기해부학·시기생리학·안질환·시기능이상에 관한 것) 라. 의료 관계 법규	조제 및 가공에 관한 것, 상품 지식(렌즈·테)과 안광학기기의 기초동작에 관한 것

비고: 의료 관계 법규는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다만, 의무기록사의 경우에는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하고, 안경사의 경우에는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4.17] [보건복지부령 제193호, 2013.4.1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2-2023-7313

제8조(시험과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 국가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실기시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5.23]

제9조(합격자 결정 등)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합격자는 필기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하고, 실기시험에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3]

제11조(면허대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의료기사등의 면허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5.23]

제12조(면허증의 발급)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사등 면허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시험관리기관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1.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 및 해당 면허증 사본
2. 법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사진(국가시험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원본의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② 삭제 <1998.9.2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제목개정 2012.5.23]

부칙 <제193호, 2013.4.17> (행정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5.17] [대통령령 제23802호, 2012.5.2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02-2023-7313

제3조(국가시험의 범위) ①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의료기사등의 종류에 따라 임상병리·방사선·물리치료·작업치료·치과기공·치과위생·의무기록·안경광학 및 보건의료 관계 법규에 대하여 의료기사등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실시한다.

②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필기시험의 과목, 실기시험의 범위 및 합격자 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5.22]

제4조(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국가시험을 관리하는 관계 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한다.

1. 정부가 설립·운영 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출 것

②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22]

제5조(시험위원)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2.5.22]

제6조(국가시험의 응시)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22]

제7조(면허증의 발급) 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2.5.22]

부칙 <제23802호, 2012.5.22>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생교육 관련 과목(제5조제1항 관련)

과정	구분	과목명
양성 과정	필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성과정의 과목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교육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2-2100-6381

제5조(평생교육 관련 과목) ① 영 제16조제2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승급과정의 이수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3.3.23>

제6조(평생교육사 자격증의 수여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7>

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0.8.19, 2013.3.23>

1. 최종학력 증명서
2.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3. 경력증명서
4.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
- 4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5. 그 밖에 평생교육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③ 삭제 <2010.8.19>

④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별표 1] <개정 2013.3.23>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5조 및 제16조제2항 관련)

등 급	자 격 기 준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은행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은행기관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2-2100-6381

제4장 평생교육사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 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 ③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 ④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자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